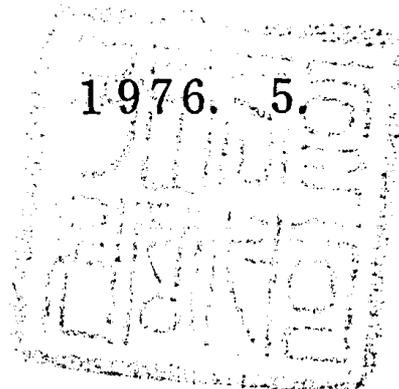


2000
200.9.23

東·西獨關係의 發展過程 (I)

— 政治的 前提條件의 設定 —



국립중앙도서관
2000.9.23

2000

國 土 統 一 院

(統一政策 翻譯資料)

東・西獨關係의 發展過程 (I)

~ 政治的 前提條件의 設定 ~

Die Entwicklung der Beziehung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Bericht und Dokumentation ~

* Bundesminister für innerde-
utsche Beziehungen

* Herausgegeben von Bundesmi-
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April 1973)

* 訳者 梁榮植 (政策企劃室 補佐官)

國 土 統 一 院
(政 策 企 劃 室)

THE UNIVERSITY OF CHICAGO
DEPARTMENT OF CHEMISTRY
5800 S. UNIVERSITY AVENUE
CHICAGO, ILLINOIS 60637
TEL: 773-936-3700
FAX: 773-936-3701
WWW: WWW.CHEM.UCHICAGO.EDU

<< 譯者：註 >>

本 政策資料는 独逸聯邦共和国 内独關係省이 發刊한 "報告書
및 文書集：東·西独關係의 發展過程" (BERICHT UND
DOKUMENTATION：Die Entwicklung der Beziehung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
tischen Republik, April 1973) 가운데 卷頭言, 序論部分과 第一
篇(政治的 前提條件의 設定, Schaffung der Politischen
Voraussetzungen)을 翻譯한 것이다.

原著는 本 翻譯部分外에도 第二篇(現實的 關係의 發展過程：
Entwicklung der praktischen Beziehungen)과 附錄(文書集：
独逸問題에 關한 44個의 主要文書：Dokumentation)을 包含
하고 있다.

방대한 內容들 가운데 序論과 "政治的 前提條件의 設定"을 번
역한 理由는 独逸의 分斷을 招來한 第2次 世界大戰의 終熄
(1945년)으로 부터 東方政策(Ostpolitik)의 實質的 出帆을
期約한 基民黨·社民黨의 大聯政(1966~1969)에 이르기까지
独逸問題의 歷史的 흐름이 要約 整理되고 있으며, 同時에 東方政
策이 本格化하기 시작한 社民黨·自民黨 聯政의 出發(1969)로
부터 東·西独關係의 새로운 時代를 열어 놓은 "東·西独 基本
條約의 締結"(1972.12.21)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중 전개된

兩獨關係의 發展過程을 獨逸政策의 脈絡속에서 体系的으로 記述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政治的 前提條件의 設定"을 통하여 兩獨關係를 民族内部的 關係로 定立, 發展시켜 나가는 理論的 現實主義的 接近法의 土台는 注目할만 하며, 兩獨頂上會談에 임하는 基本立場과 原則, 東獨의 法的地位問題를 둘러싼 爭點, 西獨의 關聯強大國과의 協商과 東獨의 態度變化 推移, 特命全權代表會談을 비롯한 一連의 會晤를 통한 通行協定과 基本條約締結 關係와 協商의 成果, 그리고 兩獨關係의 發展을 위한 座標設定等은 韓半島의 視角에서도 吟味해 볼 價值가 充分히 있다고 評價된다.

물론, 原著의 第二篇의 "現實的 關係의 發展過程"과 附錄의 文書資料 역시 統一政策研究에 寄與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第一篇은 10個章으로 構成되고 있는데, 各章의 題目은 便宜上 譯者가 삼입했다.

또한 44個 文書의 目錄과 原著의 總目次도 參與로 追加했다.

1976. 5.

目 次

卷 頭 言	9
序 論	13
* 概 括	13
** 1945년 부터 1969년 까지의 独逸問題	14
(1) 4 大國의 責任	14
(2) 「포츠담」協定으로 부터 独逸聯邦共和國과 独逸民主共和國의 樹立까지	15
(3) 独逸聯邦共和國과 独逸民主共和國의 樹立으로 부터 兩独逸國家의 「나토」 및 「바르샤바」 条約機構 加入까지	18
(4) 「제네바」 頂上會談 (1955.7) 으로 부터 蘇聯의 对東独 友好条約 (1964) 締結까지	23
(5) 大聯政 時期	28
(6) 「베를린」의 特殊地位	30
第 1 篇 政治的 前提條件의 設定	33
第 1 章 独逸政策의 出發點	35

第 2 章	獨逸民族의 分離生活 (Auseinanderleben) 防止 및 共存 (Miteinander) 을 향한 並存 (Nebenei- nander) - 獨逸內의 特殊關係 및 內獨關係의 論理 - 東西獨 頂上會談을 위한 全權代表 接觸	37
第 3 章	「에르프르트」 頂上會談 (1970.3) 과 「캄셀」 頂上 會談 (1970.5) - 「슈토프」의 7 個項目 原則, 「브란 트」의 6 個項目 原則 및 所謂 「캄셀」 20 個項目 原則	45
第 4 章	獨逸民主共和國의 法的 地位問題를 圍繞한 協商의 爭點	54
第 5 章	獨逸聯邦共和國 · 蘇聯條約, 獨逸聯邦共和國 · 「폴란드」 條約의 成立과 4 大國會談 進展에 따른 獨逸民主 共和國의 協商態度 變化	56
第 6 章	「바르 · 콜」 會談 (兩獨國務相 會談) 과 通行協商 (兩獨 通信省代表 會談)	62
第 7 章	兩獨協商의 成果	67
第 8 章	同等權의 原則, 國際聯合憲章의 尊重의 原則, 武力拋棄 의 原則 및 獨立性의 原則에 의한 善隣關係 發展은 協商의 基礎	69
第 9 章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의 基本關係에 관한 條約 (所謂, 「基本條約」) 및 正常化를 위한 道程	73

第10章 断絶斗 敵対關係로 부터 善隣關係로..... 81

* 註：文書目錄 (文書 1 ~ 文書 44) 83

** (參考事項：總目次 = 東・西獨關係의 發展
過程) 93

1. 下列各数中，是正数的是（ ）

① -2 ② 0 ③ 1 ④ -3

2. 下列各数中，是负数的是（ ）

① 5 ② -4 ③ 0 ④ 1

3. 下列各数中，是整数的是（ ）

① 1.5 ② -2 ③ 0.5 ④ 1

4. 下列各数中，是分数的是（ ）

① 1 ② -2 ③ 0.5 ④ 1.5

5. 下列各数中，是自然数的是（ ）

① -1 ② 0 ③ 1 ④ -2

6. 下列各数中，是正整数的是（ ）

① 1 ② -2 ③ 0 ④ -3

7. 下列各数中，是负整数的是（ ）

① 1 ② -2 ③ 0 ④ -3

8. 下列各数中，是正分数的是（ ）

① 1.5 ② -2 ③ 0.5 ④ 1

9. 下列各数中，是负分数的是（ ）

① 1.5 ② -2 ③ 0.5 ④ 1

卷 頭 言

聯邦政府는 1970年初에 이르러 最初로 獨逸問題의 發展過程과 內獨關係의 狀況에 관한 資料集을 發刊한 바 있다.

聯邦政府의 文書集(第1輯)과 여기에 내놓는 現 資料集을 比較해 보면,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의 關係 發展이 과연 量과 質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進展되고 있으며 또한 어느 정도로 進展되어 왔는가를 詳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모스크바」條約, 「바르샤바」條約 그리고 「베를린」에 관한 4 大國協定과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간에 체결된 通行協定에 이어서 1972.12.21에 批准된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간의 關係에 관한 基本條約은 對決(Gegeneinander)에서 부터 並存(Nebeneinander)의 調整過程을 거쳐 兩獨逸國家의 共存(Miteinander)으로 向한 壯途에 있어서, 그리고 歐洲의 平和祖囑을 爲因인 緊張狀態를 극복해 나가는 長期的 過程에 있어서 하나의 힘차고 뜻있는 발걸음이라 할 것이다.

長期間에 걸친 無益한 敵對狀態가 계속된 후, 즉 兩獨逸國家가 수립된지 23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서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간에는 將來 펼쳐질 協力을 위한 하나의 확고한 基盤이

~특히 基本條約으로서~ 마련되었다. 이를 통한 관계정상화 誘導
過程은 무엇보다도 獨逸國民의 利益과 所望에 우선적으로 寄與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過程은 兩獨逸國家 스스로에 의해서만이 全般的으로 시작
될 수 있는 일이다.

對話와 協商은 한편으로는 獨逸戰爭이 進行되었던 期間과 또한
戰後期間에 발생한 바로 그 狀況에서 부터 출발해야 하며, 또
한편으로는 우리 民族 (Volk)의 歷史로 부터 生成되고 우리 憲
法의 敎示 (Auftrag)에 副應하는 歷史的, 政治的 및 法律的 事實
(Gegebenheiten)들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兩獨逸國家의 關係에 관한 協定은 4大國의 既存權利와 責任을
考慮하고 있다. 條約行爲 (Vertragwerk)는 獨逸內에 2개의
國家가 존재하고 있다는 特殊狀況關係를 特徵지워주고 있다.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이 闡明한 내용은 4大國 大使들이
獨逸의 狀況에 대하여 闡明했던 내용과 符合되는 것이다.

兩國政府는 그들사이에 아직도 意見의 差異가 尙存하고 있음을
잊지않고 있다. 그리하여 兩側은 基本條約속에서 각기 相異한 見解
의 立場에서 民族의 問題를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으며, 동시에
統一은 成就될 수 없을 것이라는 問題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獨逸聯邦共和國의 立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
은 여전히 확고하다.

즉, 聯邦政府는 獨逸民主共和國政府가 급기야 接수한 한 書翰에

署名하기에 앞서, 獨逸民族 (deutsche volk) 이 필경 자유로운
自決原則에 따라 統一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歐洲의 狀態를
위하여 追求하는 目的은 결코 條約上의 義務와 모순되지 않는다는
點을 분명히 천명한 바 있다.

「베를린」에 관한 4 大國協定, 通行條約, 基本條約 및 其他 獨逸
民主共和國과 맺은 諸規定과 協定은 직접적으로 일련의 人間生活에
便宜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특히 基本條約에 있어서는 여러分野에 걸친
未來의 協力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合意한 原則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個個 市民들에 대해서는 이미 성취된 일은 더욱 구체화
되고 명백해지게 될 것이며, 雙方이 合意한 計劃들은 더욱 더
분명히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關係正常化 過程은 서로 兩國
關係에만 局限시키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들의 땅에 살고
있는 人間들의 個人的 生活領域까지도 직접 포함하는 것이다.

戰後 四半世紀 以上の 歲月이 흐르는 동안 전개된 발전과정은
民族의 統一이 단순히 추상적인 法律的 概念도 아니며, 동시에
美辭麗口에 그치는 상투어가 아님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또다시 매일 매일 서로 相面하고 서로 疎通함을 통하여 共同帰屬
意識을 지탱하고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갈 때만이 비로서 우리들
은 民族의 統一에 畀與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聯邦政府는
人類에게 가능성을 부여하게 될 바로 그러한 課業을 決然히 포용
했던 것이다.

불과 몇년전에 볼 수 있었던 兩獨逸國家關係의 狀況과 比較해 볼때, 그리고 이와같은 狀況의 變化없이는 우리 民族의 分斷에 특별히 關係된 사람들의 生活條件은 전혀 改善될 수 없다는 사실을 認識할 때, 실로 獨逸民主共和國과 締結한 條約들과 協定들은 質·量的으로 새로운 發展過程의 出發點은 明若觀火한 사실이다.

聯邦政府는 이와같이 새로운 發展歷程에 進지하고 속연한 자세로 임함으로써 더욱 速進수범해 나갈 것이다.

內獨關係省 長官 에곤 프랑케 (Egon Franke)

序 論

* 概 括

本 책 자는 1970 年 度 版 施 政 報 告 書 (Bericht zur Lage der Nation) 資 料 와 連 關 되 며, 1969 年 부 터 1972 年 가 지 의 期 間 中 전 개 된 獨 逸 聯 邦 共 和 國 과 獨 逸 民 主 共 和 國 의 關 係 에 대 한 發 展 過 程 을 記 述 하 고 있 다.

먼저 政 治 的 關 係 의 發 展 過 程 이 포 괄 적 으 로 설 명 된 다. 그 다음 으 로 本 報 告 書 는 제 반 현 실 적 인 關 係 의 發 展 過 程, 특 히 交 易 部 門, 우 편 및 채 신 제 도, 通 行 關 係, 「 베 를 린 」 (西 伯 林) 連 結 關 係, 人 道 主 義 的 問 題, 法 律 · 行 政 支 援 關 係, 文 化 分 野 關 係, 教 育 制 度 와 學 問 關 係 그리고 出 版 등 현 실 적 인 關 係 의 發 展 過 程 을 포 괄 하 고 있 다.

原 則 과 더 늘 어 서 동 시 에 典 拠 로 서 기 여 할 수 있 는 主 要 文 書 들 의 件 찬 과 그 出 處 및 目 錄 을 수 록 한 것 은 本 報 告 書 의 實 質 的 有 益 性 을 높 이 는 데 기 여 하 게 될 것 이 다.

연관성을 확실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선 1969년
秋期까지에 이르는 歷史의 흐름을 1970年度資料集에서 導出하여
序論的 記述形式으로 재설명케 될 것이다.

** 1945年 부터 1969年 까지의 獨逸問題

(1) 4大國의 責任

獨逸軍이 항복하고 聯合軍이 獨逸을 占領한 후, 美國, 英國,
「프랑스」 및 蘇聯등 主要戰勝國들은 1945年 6月5日 「베를린」
共同宣言으로 독일의 最高總帥權을 引受했다. 1944年 9월 12일의
「런던」議定書와 1944年 11월 14일에 합의한 協定을 근거로
主要 戰勝國들은 聯合國管理理事會(Allierten Kontrollrat)를
설치했다. 聯合國管理理事會는 4大國의 共同機關으로서 4개 占領
地區에 대한 軍事管轄 措處를 「베를린」의 聯合軍 司令部에 竝列
시키기로 되어 있었다.

「포츠담」會談에 있어서는 1945年 8월에 이르러 美國, 英國
및 蘇聯간에 獨逸處理問題에 관한 보다 詳細한 協定이 成立되었으
며, 그후 곧 「프랑스」가 特定留保條件으로 이 協定에 참가했다.
그러나 이 「포츠담」協定の 해석과 실행에 관해서는 4大國간에

本質的이며 調整不可能의 見解差異가 곧 발생했다. 그리하여 1948년에 이르러서는 聯合國管理理事會 (Allierten Kontrollrat)는 活動을 中止하게 되었고, 蘇聯은 「베를린」에 있는 聯合軍司令部로부터 그들의 代表를 철수했다.

그리하여 4 大國들은 4 大國協定에 근거하여 오늘날까지 全体로서의 獨逸과 「베를린」에 대하여 共同責任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2) 「포츠담」協定으로 부터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의 樹立까지

1945년 7월 17일부터 8월 2일까지의 기간중에 있었던 「포츠담」會談에서 戰勝國들은 敗戰 獨逸地域에 대한 占領政權 (Besatzungsregime)의 統治實施에 관한 協定을 체결했다. 여기에 獨逸의 代表는 참석하지 못했다.

「포츠담」協定은 獨逸의 統一로부터 出發하고 있다. 「포츠담」協定은 獨逸에 대한 平和協定 (Friedensregelung)을 成案하기 위한 外相會議 (Außenministerrat)의 設置를 豫見하고 있었으며 이 外相會議는 앞으로 구성될 독일정부를 통하여 引受하도록 되어 있었다.

“最初の 統轄期間”중에 通用되었던 “政治的 諸原則”에 있어서는 獨逸의 完全武裝解除 및 非武裝化, 民主 原則에 입각한 獨逸

국민들의 政治生活改革등 여러가지 原則들이 합의되었다. (여기서 民主原則이란 예컨대 意思表現의 自由, 言論의 自由 그리고 宗教의 自由등에 관해 언급된 것이었다)

“ 經濟的 原則 ”에 있어서는 예컨대 獨逸을 “ 單一經濟統一体 ” (*einzigste wirtschaftliche Einheit*)로 취급해야 할 것이라는 原則등을 말한다.

蘇聯 占領当局은 그들의 占領地域内에서 지체없이 전반적인 政治, 經濟, 社会構造變更措置와 行政의 中央集權化를 실시했다. 그리하여 獨逸을 別個의 占領地区들로 조개어 分割함으로써 本質的인 分離의 過程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西方側의 경우에 있어서는 경제적 통일성을 유지할 목적으로 占領地区들을 單一化했다. (1947년 1월 1일에는 2個区域이었고 1949년 4월 8일에는 3個区域이었다)

接近을 시도하기 위하여 獨逸의 行政機關이 噴出한 온갖 노력은 霧散되고 말았다. (1947.6.6 ~ 6.7의 「 뮌헨 」 會談 : *Munchener Ministerpräsidenten Konferenz*)

1945년부터 1947년까지의 기간중에 進행되었던 一連의 外相會談 (1945.9.10 - 10.2 「 런던 」 會談, 1946.4.25 ~ 1946.7.12 「 파리 」 會談, 1947.3.10 ~ 4.24 「 모스크바 」 會談, 1947.11.25 ~ 12.15 「 런던 」 會談등)에서 4大國은 獨逸問題處理에 하등

의 進展을 이룩하지 못했다. 西方勢力과 蘇聯간의 緊張狀態는 高潮되고 있었다.

西獨에 있어서는, 1949년 5월 8일 西獨議會 (Parlamentarische Rat)는 獨逸聯邦共和國의 基本法 (Grundgesetz)을 채택했다. 이 基本法은 5월 23일에 發効되었다. 1949년 8월 14일에는 드디어 第1次 獨逸聯邦議會選舉가 實施되었다. 한편, 蘇聯占領地區에 있어서는 1949년 5월 30일 제3차 獨逸人民大會 (Deutsche Volkskongress)는 獨逸民主共和國 憲法을 채택했으며, 獨逸人民會議 (Deutsche Volksrat)로서 構成했다.

이 獨逸人民會議 (Deutsche Volksrat)는 1949년 10월 7일에 臨時人民議會 (Provisorische Volkskammer)를 布告했다.

1950년 10월 15일에는 單一候補名簿에 의한 選舉를 통하여 第一代 獨逸民主共和國人民議회가 構成되었다.

聯邦政府는 聲明을 통하여 蘇聯 占領地區에 수립된 政權은 住民의 自由로운 意思의 表現없이 出現한 것이기 때문에 不法이라고 糾彈했다. 西方 3大國들은 이와 같은 聯邦政府의 見解를 「 뉴욕」 外相會議 (1950.9.18)에서 支持했으며, 聯邦政府는 自由意思에 의하여 구성된 唯一한 正統合法 (legitim) 政府로서, “國際關係에 있어서 獨逸民族의 代表로서 獨逸을 위하여 代辨할” 權利를 가진다고 闡明했다.

이에 대하여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는 聯邦政府를 “괴뢰政府” (Marionetten-Regierung) 라고 규탄했다. 1949년 11월 10일 [빌헬름 피엡] (Wilhelm Pieck) 독일민주공화국首班은 人民議會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獨逸의 分離는…… 결코 독일민주공화국에 의하여 승인되지 않을 것이다. 西獨 政府와 獨逸民主共和國 政府가 상호승인할 것인가 승인하지 아니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독일 국민의 民族的 利益에 共同으로 병행하여 寄與하는 일이다. ……”

(3)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의 獨立으로 부터: 東·西獨의 「나토」 및 「바르샤바」 條約機構 加入 까지

兩側의 再統一提議들은, 1950年代 초반 韓國戰爭을 起點으로 東·西 緊張이 絶頂에 이르는 局面으로 접어들게 되자 中斷되었다. 西方側에 대해서 이와같은 武力에 의한 東·西갈등은 歐洲에 있어서 蘇聯의 위협적인 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防禦態勢를 강화시키고 이러한 틀속에서 獨逸聯邦共和國의 再武裝을 促進시킨 動因이 되었다. 그리하여 獨逸聯邦共和國을 포함하는 歐洲의 經濟的, 軍事的 統合 計劃이 急進展을 보게 되었다. 이와 같은 事態展開 속 에서 聯邦政府는 自体安全을 決定的으로 強化할 수 있는 機會와 또 하나의 同等한 會員으로서 西方世界에 加入할 수 있는 機會를 捕捉하기에 이르렀다. 東獨의 內閣首相 (Ministerpräsident) 인 [그로트볼] (Grotewohl) 은 1950년 11월 30일 聯邦首相인

「아데나워」(Adenauer)에게 보낸 書翰에서, 東·西獨 代表로
구성되는 所謂 “全獨委員會” (Gesamtdutschen Konstituier-
enden Rat)를 提案했다. 이 全獨委員會는 臨時全獨逸政府의
設置를 준비하며, 講和條約을 체결함에 있어서 4 大國들에게 協議를
구할 것이며 또한 全獨選舉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聯邦首相 「아데나워」는 1951년 1월 15일 聲明을 통하여
이 提案을 拒否했으며, 동시에 “모든 4개 占領地區에서 國際監視
下에 全獨議會 (gesamtdeutschen Parlament)의 構成을 위한
自由, 普通, 平等, 秘密 및 直接選舉를 實施할 것”을 要求했다.
「아데나워」首相이 轉명한 聯邦政府의 聲明과 1951년 3월 9일
聯邦議會(下院)의 決議는 다같이 獨逸民主共和國에 있어서 非民主
的으로 誘導된 狀態를 變更함으로써 우선적으로 自由選舉를 위한
前提條件을 형성시켜야 할 必要性을 강조하고 있었다.

“民主主義國家制度에 속하는 市民의 自由는, 적어도 蘇聯占領地域
의 自由選舉가 實施되기 이전에, 그 地域內에서 長時間에 걸쳐서
回復되어야 할 것이다.” (政府의 聲明書中에서)

「그로트볼」(Grothwohl)의 政府聲明과 관련하여 1951년
9월 15일 東獨의 人民議會(Volkshammer)는 聯邦議會에 보내는
呼訴文을 채택했는데, 이 呼訴文은 講和條約의 早速한 체결과
全獨逸委員會(gesamtdeutsche Beratung)의 召集을 促求하고 있
었다. 1951년 9월 27일 聯邦議會는 全獨選舉를 위한 選舉秩序와

이러한 全獨選擧의 前提條件을 檢査할 中立委員會에 關하여 聯邦政府가 提示한 14個 原則을 승인했다. 「그로트볼」은 1951년 10월 10일 人民議會席上에서 聯邦政府가 提示한 14個原則들중 大部分은 容納될 수 없는 것이라고 論評하면서, 全獨委員會의 召集을 되풀이 하여 提議했다. 「아메나워」 首相은 1951년 10월 16일 聯邦議會의 演說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理由를 내세워 「그로트볼」의 提議를 拒否했다. 즉 理由의 근거란 聯邦政府는 法治 國家의 秩序와 自由主義的인 政府形態, 그리고 人權擁護와 平和維持 守護를 無條件 認定하고 保障할 意向이 있는 그러한 政府들에 한해서 그들과 獨逸의 再統一을 論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聯邦政府의 發議에 따라 西方側 強大國들은 1951년 11월중 國際聯合에서 獨逸全域에 걸쳐 自由選擧를 실시할 수 있는 前提條件들이 成熟되고 있는가의 如否를 調査할 委員會의 設置를 提案했다. 國際聯合總會 (Die UNO-Vollversammlung) 은 1951년 12월 20일 蘇聯側 共產陣營의 主張에 반대하여 적절한 國際聯合委員會 (UNO-Kommission) 設置에 관한 決議案을 채택했다. 그러나 國際聯合委員會는 蘇聯占領當局과 獨逸民主共和國當局이 委員會의 入國을 承認하지 않고 拒否함으로 인해서 獨逸民主共和國地域内에서는 活動을 할 수 없었다.

1952년초 西方側이 하나의 歐洲防衛共同體의 設立을 위한 條約草案에 原則的인 合意를 보게되자, 蘇聯側은 스스로 覺書措置를

通하여 西方強大國들에 맞서 獨逸問題에 介入하고 나섰다. 蘇聯은 1952년 3월 10일의 제1차 黨書에서 武裝中立原則下에 全獨逸政府가 直接 參加하는 條件으로 獨逸을 위한 講和條約(Friedensvertrag)을 조속히 체결할 것을 促求했다. 강화조약에 첨가될 주요내용으로서는 制限된 國軍의 創設과 강화조약의 발효후 늦어도 1년까지는 占領軍이 獨逸에서 철수할 것등의 項目들을 計劃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西方側은 1952년 3월 25일 回信黨書에서 對獨逸講和條約의 체결문제는 國際監視下의 自由選舉에 基礎한 全獨逸政府의 樹立을 前提로 해야 한다고 宣言했다.

한편, 蘇聯 政府는 1952년 4월 9일 새로운 黨書를 통하여 全獨自由選舉問題의 討議를 위한 4大國會談(Vier-Mächte-Konferenz)의 즉각적인 開催를 提議했다. 그러나 蘇聯 政府는 國際聯合委員會를 통하여 全獨自由選舉를 실시하기 위한 前提條件을 調查한다는 데 대해서는 단호히 反對했으며, 그대신에 4大國委員會(Vier-Mächte-Kommission)의 構成을 提示했다.

西方側 強大國들은 1952년 5월 13일 제2차 回信黨書에서 同盟條約의 체결에 관해 全体獨逸政府가 가지는 決定의 自律性を 확고히 주장했으며, 4大國委員會案을 拒否했다. 그밖에도 계속된 黨書交換도 결국 아무런 成果없이 끝나고 말았다. 輿論 갖가지 意見의 差異는 西方 強大國들이 願했던 國際聯合委員會問題와 蘇聯이 願했던 統一獨逸의 中立問題에 그 焦點이 集中되고 있었다.

西方強大國과 聯邦政府는 蘇聯과 獨逸民主共和國의 提案들에 대하여 그들의 態度를 취함에 있어서는 本質적으로 蘇聯側의 提案들은 眞正으로 誠意있게 構想된 것이 아니라, 獨逸條約의 實現과 歐洲防衛共同體의 結成을 방해하기 위하여 考案된 마지막 안간힘의 試函을 反映할 뿐이라는 批判立場을 취했다.

1954년 1월과 2월 4大國들은 「베를린」 外相會談에서 西方側의 獨逸計劃案(「이든」計劃)과 蘇聯側의 獨逸計劃案(「몰로토프」計劃)을 제기했다. 「이든」案은 全獨自由選舉實施를 出發點으로 想定하고 있는 반면, 「몰로토프」案은 獨逸民主共和國議會와 獨逸聯邦共和國議회를 통하여 臨時 全獨逸政府를 構成할 것을 勸告하는 것이었다. 이 外相會談은 參席者들이 獨逸問題 해결을 위한 段階的 措置의 順序에 關係 意見의 一致를 보지 못함으로써 결국 決裂되고 말았다. 蘇聯은 1954년 3월 外相會談의 流產을 獨逸民主共和國에게 공식으로 “主權”을 부여하는 機會로 삼았다.

西歐同盟體(WEU)의 結成과 獨逸聯邦共和國의 北大西洋條約機構(NATO)加入을 誘導한 「파리」會談의 最終日인 1954년 10월 23일, 蘇聯은 西方 3大國들에게 보내는 覽覽에서 「이든」案(Eden-Plan)을 討議原則으로서 受諾할 用意가 있음을 밝힘과 동시에 「파리」條約을 실행해 나가는 過程에 있어서 獨逸의 再統一은 長期間 不可能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력히 表明했다. 西方 3大國들은 이와같은 事態 進行을 西歐 同盟의 結成을 저지,

와해시키고 拒否하기 위한 소련의 試圖로 이해했다.

1955년 5월 5일 드디어 「파리」條約은 發効했으며, 이에 따라 聯邦共和國에 있어서의 占領規定은 철폐되었다. 그리하여 獨逸聯邦共和國은 西歐同盟體에 加入하게 되었고, 1955년 5월 9일에는 「나토」(NATO)의 會員國이 되었다. 한편 獨逸民主共和國은 1955년 5월 14일에 發足된 「바르샤바」條約(Warschauer Pakt) 機構에 加入하기에 이르렀다.

(4) 「제네바」 頂上會談(1955.7)으로 부터 蘇聯의 對東獨友好條約(1964)까지

1955년 7월에 열린 「제네바」頂上會談 過程에서 4大國 首腦들은 “獨逸問題調整을 위한 共同責任과 自由選擧를 통한 獨逸의 再統一에 대한 共同責任”을 認定한 訓令을 4大國 外相들에게 發給하는데 合意했다. 그러나 「후르시초프」는 歸路에 東「베를린」에 들려 “獨逸民主共和國의 政治的, 社會的 業績(Errungenschaften)”을 말살시키는 어떠한 獨逸問題 解決方法도 同意하지 않을 것이라고 宣言했다.

獨逸聯邦共和國과 外交關係를 수립한 직후, 蘇聯은 이어서 1955년 9월 20일 獨逸民主共和國과 相互關係를 규정한 條約을 체결했다. 특히 이 條約에서 蘇聯은 獨逸民主共和國에게 獨逸聯邦共和

국 關係에 대한 主權까지도 위임했다. 이때 부터 蘇聯은 再統一 問題는 兩獨逸國家의 所管事項 (Angelegenheit) 이라고 거듭 強調 했다. 그후 蘇聯과 獨逸民主共和國은 全獨逸自由選舉問題도 기피해 버렸다.

1955년 10월 27일 開幕된 「제네바」 外相會議에서 西方3大 國들은 獨逸의 再統一을 위한 「이든」修正案과 병행하여 再統一 進行過程에서 條約參加者들 (蘇聯에게도 해당) 에 대하여 安全保障力 을 즉각 發動시키는 所謂, 保障條約案 (Entwurf eines Zusicherungsvertrages) 을 提議했다. 이에 대하여 蘇聯은 “獨逸民主共 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이 그 解決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問題들을 취급할 諮問機關으로서 ” 獨逸民主共和國 議會代表들과 獨逸聯邦共和 國議會代表들로 構成되는 하나의 全獨逸委員會 (gesamtdeutschen Rat) 를 設置할 것을 들고 나왔다.

西方強大國들은 蘇聯의 提議를 拒否했다. 왜냐하면, 이 提議는 政府首腦들이 합의한 「제네바」訓令과는 반대로 自由選舉에 의한 再統一에 관해서는 하등의 考慮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몰로토프」 (Molotov) 는 西方側의 自由選舉 提案을 拒否 하고 있었던 것이다.

聯邦政府는 상당히 여러차례 會議 함으로써 主導權을 장악하고서, 한편으로는 직접 소련에 대하여,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西方 強大

국들에 대하여, 平和와 自由속에서의 独逸의 再統一 (Wiedervereinigung Deutschlands in Frieden und Freiheit) 을 促進할 것을 거듭 主張했다. 동시에 聯邦政府는 全体独逸의 自由選舉 實施를 必須不可欠의 前提条件으로 삼아야 한다고 계속 固執했다.

1957年 7월 26일 独逸民主共和国閣議 (der Ministerrat der DDR) 는 分断独逸의 統一을 위한 國家聯合案(Konföderationsplan) 을 提示했다. 國家聯合案 構想은 1967년 第7次 社会主義 統一黨 (SED) 의 党大會때까지 各樣各色的 形態로 東「베를린」이 내놓은 여러가지 提議내용들 가운데 核心部分을 이루고 있었다.

하나의 聯合 (Konföderation) 을 構成하기 위한 前提条件으로서 独逸聯邦共和國에 있어서의 一定한 社会的, 經濟的 關係의 變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主張들이 반복되었다. 國家聯合 (Staatenbund) 의 形成은 우선 하나위 國際法上 効力を 발하는 條約이 체결된 후에 가능한 것이었다. 蘇聯이 이러한 東独案을 支持한 반면, 聯邦政府는 1958年 1月 20日 再統一은 2개의 政府의 問題가 아니며 ' 独逸民族의 排他的인 管轄權 ' (ausschließlichen Zuständigkeit des deutschen Volkes) 에 屬하는 問題라는 理由를 들어 拒否했다.

50年代末 「후르시초프」의 「베를린」 最後通牒으로써 独逸의 緊張狀態는 絶頂에 達했음이 뚜렷해졌다. 이러한 局面속에서 蘇聯은 1959年 1月 10日 새로운 对独講和 條約案을 내놓았다.

蘇聯은 그內容 가운데 2개월내에 兩獨逸國家와 獨逸의 過去戰爭對
象國들이 參加하는 平和會議 (Friedenskonzferenz) 를 召集할
것을 言及하고 있었다. 平和條約은 獨逸側에 있어서는 獨逸聯邦共
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이 署名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再統
一을 위한 道程으로서 새롭게 하나의 全獨逸聯邦 (gesamtdeuts-
che Konföderation) 의 構成을 勸告했는바, 이 聯邦은 兩獨逸國
家가 平和會議때까지 하나의 相應하는 國際法上的 條約을 체결할
경우 平和會議에서 代辨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후르시초프」의 威脅과 관련하여, 獨逸民主共和國과 하나의 分離
된 單獨平和條約 (Separat-Friedensvertrag) 을 체결하기 위해서
1956년 여름 「제네바」에서는 또 하나의 새로운 「제네바」外相
會談이 열렸다. 이 會議에는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
代表들이 協議者 (Berater) 로서 참석했다. 西方強大國들은 全般
的인 軍縮案이 필히 포함되는 歐洲의 安全保障體制의 確立과 동시
에 獨逸統一의 回復을 위한 段階的 方案 (Stufenplan) 을 提示
했다. 自由選舉를 통한 「베를린」의 再統一에 대해서는 全獨混成
委員會의 構成에 관한 道程은 필히 全体獨逸의 自由選舉와 항구적
인 平和秩序를 위한 全獨逸政府의 樹立을 誘導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蘇聯은 이러한 西方側案에 반대하여 그들의 平和條約 체결
주장을 들고 나왔다. 이 會談에서는 아무런 意見 接近도 이루어
지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1961년 8월 13일 「베를린」障壁이 構築되었고 「베를린」의 分離現象은 더욱 深化되어 갔다.

「후르시초프」가 獨逸民主共和國과 單獨講和條約을 체결함으로써 그의 위협을 減少시킨후, 「모스크바」는 1964년 6월 12일 東 「베를린」當局과 하나의 友好條約을 체결했다. 蘇聯은 이 友好條約 속에서 東獨에게 東獨의 地位, 主權 및 領土의 不可侵性을 保障했다. 동시에 兩當事者는, “平和的이며 民主的인 原則에 의한 獨逸統一의 美現” (die Verwirklichung der Einheit Deutschlands auf friedlicher und demokratischer Grundlage) 을 共同目標로 삼는다고 宣言했다.

友好條約의 第7條는 - 다음과 같이 明文化하고 있다. “두개의 主權獨逸國家들 (Zweier Souveräner deutscher Staaten) 에 대해서…………… 平和愛護的이고 民主的인 하나의 統一獨逸國家의 建設은 오로지 兩 主權獨逸國家간의 同等的한 취급과 理解를 통해서만이 達成될 수 있다.”

西方側은 1964년 6월 26일 聯邦政府의 勸告에 따라 1964년 6월 26일 獨逸問題聲明 (Deutschlandklärung) 의 형식으로서 東獨과 蘇聯간에 체결된 友好條約에 基礎한 東方側의 見解를 拒否했다. 동시에 西方強大國들은 “平和的인 方法으로 自由속에서의

獨逸의 統一을 回復할 수 있는 모든 機會를 有用化"할 勇의성을 강력히 表明했다.

聯邦政府는 그의 再統一概念 (Wiedervereinigungs Konzept) 에 하등의 變化없이 確固不動한 立場을 고수했다. 당시의 外相은 1965년 2월 10일 獨逸問題질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거기에는 결코 새로운 概念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모든 사람들에게 既히 알려진 概念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 概念은 聯邦政府에 의하여 數시로 充分히 對변된 하나의 積極的이고 (aktiv), 常用的이며 (täglich), 直接的인 (unmittelbar) 再統一政策의 概念이다. 이 概念에 대해서는..... 獨逸은 반드시 再統一 되어야 하며, 또한 獨逸은 再統一될 것이라는 主命題 (Hauptsatz) 가 존재한다"

(5) 大聯政 時期

大聯政 (Großen Koalition) 成立以後 聯邦政府는 1966년 12월 13일 政府聲明에서 斷絶의 時代임에도 불구하고 獨逸國民들 간에 계속 벌어져 가고 있는 相互分離生活狀態 (ein weiteres Auseinanderleben) 를 緩和시키고 또한 2개의 分斷部分間에 人事, 經濟 및 精神의 유대關係를 "全力量을 다해 促進시키기 위하여"

獨逸의 다른 部分에 존재하고 있는 當局 (Behörden) 과 接觸을
 再開始할 용의가 있다고 闡明했다. 獨逸民主共和國의 社會主義統一
 黨 (SED) 第7次 黨大會에 즈음하여, 聯邦政府는 1967년 4월
 12일 東「베를린」政府에 대하여 16個 項目의 구체적인 對話主題
 를 提議했다. (人間生活의 便宜促進, 經濟, 交通기술상의 (verkehr-
 stechnisch) 協力增進, 科學, 技術 및 文化交流에 관한 協定등)
 獨逸民主共和國의 內閣 議長인 「슈토프」 (Willi Stoph) 首相
 은 1967년 5월 10일 聯邦首相에게 書翰을 發送했는데, 그는 이
 書翰을 통하여 ~4월 12일의 聯邦政府의 提議에는 동의하지 않은
 채 ~ 兩獨逸國家의 關係 정상화에 관해 討議할 것을 제의했다.
 聯邦政府의 「키싱거」 (Kiesinger) 首相은 1967년 6월 13일
 그의 答信에서, 4월 12일의 命題에 관하여 거듭 언급했으며 對
 話를 위해서는 어떠한 政治的 前提條件도 없이 兩側의 全權代表
 (Beauftragte) 를 임명할 것을 제의했다. 1967년 9월 18일
 제2차 書翰에서 「슈토프」는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간
 의 正常關係 回復 및 保護義務 (Pflege) 에 관한 條約』 構想案
 을 제시했으며, 이 條約構想案에 대하여 協商할 것을 提議했다.
 이 條約에 있어서는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간의 關係는
 “獨逸民族의 主權國家들간의 關係 (die Beziehungen Souveräner
 Staaten deutscher Nation) 로 특징지워지며, 平和的인
 並存 (Nebeneinander) 과 漸進主義的인 접근을 위하여 노력하는
 關係이며, 또한 본질적으로 國際法上 通用되고 있는 一般原則들이

적용되는 關係이다. 聯邦首相은 9월 28일 條約案에 同의를 表明하지는 않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答信을 보냈다. 즉, 1967년 4월 12일의 聯邦政府提議에서 이미 윤곽을 제시한 바와 같이 實質적인 措置計劃을 協商하기 위하여 聯邦首相室所屬 國務相 (der Staatssekretär im Bundeskanzleramt) 이 主務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이러한 일이 있는 후, 獨逸民主共和國의 代辨인은 公式 演說과 聲明을 통하여 「슈토프」의 條約案은 아직도 (協商) 테블에 놓여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외에도 그는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한 國際法上的 事前承認이 없이는 여하한 獨逸聯邦共和國과의 對話도 拒否한다고 밝혔다. 1967년 4월 26일 共產主義 勞動黨이 채택한 「칼스바더」聲明 (die karlsbader Erklärung) 에서는 “獨逸民主共和國의 承認과 독일 민주공화국의 主權을 守護함은 歐洲의 安全을 위한 鬪爭의 第一課題” 라고 밝히면서, “兩獨逸 關係 및 西「베를린」과 獨逸民主共和國間의 特別한 關係는 물론, 모든 나라들과 獨逸民主共和國間의 關係정상화” 를 促求했다.

(6) 「베를린」의 特殊地位

1944년 11월 14일에 文書화된 「런던」議定書를 基礎로 하여, 1945년에 이르러서는 4개의 占領地區와 병행하여 大「베를린」 (Groß-Berlin) 즉 하나의 特別占領區域 (ein besonderes Besa-

tzungsgebiet)이 設定되었다. 이 特別占領区域은 一次的으로 우선 4大戰勝國들이 공동으로 管理하기로 되어 있었다. 軍事占領軍들은 「베를린」駐屯 戰勝國들로 하여금 最高權限(die oberste Gewalt)을 행사하도록 했으며, 戰勝國들은 占領區域의 安全維持와 「베를린」市の 生存權을 위한 責任을 負擔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1948년 이래 4大國管理의 복구를 계속 拒否해온 蘇聯의 態度는 大「베를린」(Groß-Berlin)의 特殊地位를 法的으로 變更시키는 것은 아닌 것이다.

1949년 이래 西方 強大國들은 그들의 占領區域內에서 自由選舉에 의해 구성된 「베를린」의 獨逸政治 組織體에 대해 立法, 行政 및 司法權을 漸進적으로 양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3大 「保護國」들은 그들의 國際的 義務를 履行하기 위하여, 「베를린」의 公共秩序의 維持와 그 地位 및 安全의 保護를 위하여, 그리고 「베를린」의 경제, 交易 및 交通通信을 위하여 필요한 制限 措置 權限들을 그들 자신에게 留保했다.

「베를린」의 生存權 保障은 3개의 西方區域과 聯邦共和國과의 密接한 유대關係를 必須不可欠의 것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結束은 「베를린」(西伯林)市民의 意思에도 符合되는 것이었다. 「베를린」의 特殊地位와 強大國들의 國際的 義務에 副應하여 3大 「保護國」들은 여러가지의 措置를 통하여 「베를린」(西伯林)과

聯邦共和國間의 結束關係를 다지기 위한 基礎를 닦아 놓았다.

이 結束을 위한 基礎는 수년간 實踐해 나가는 過程에서 西方3 大國들과 合意를 보게 됨으로써 공고화되었으며 가일층 발전되었다.

그리하여 聯邦政府는 西方區域 (Westlicher Sektor) 의 生存權 保障을 위한 共同責任을 負擔하게 되었다. 이는 聯邦政府가 동의한 義務에는 물론이러니와 聯邦政府의 信念에도 符合되는 것이다.

1952年 이후 「베를린」 (西伯林) 은 聯合軍司令部 (Allierten Kommandantur) 가 認可한 處理方式에 따라 聯邦의 立法權, 특히 화폐의 本位, 信用, 환거래, 國籍 및 여권, 移民과 移住, 関稅 및 交易圈의 單一化, 交易 및 航行協定, 商品交通의 自由, 對外交易과 支持協定 등에 관한 立法權을 引受했다.

「베를린」 (西伯林) 市와 「베를린」 市民들은 西方側 3 大 聯合國의 全權위임에 따라 國家間의 交通往來 (Zwischenstaatlichen Verkehr) 에 있어서는 獨逸聯邦共和國를 통해 代表되고 있다.

第 一 篇

政 治 的 前 提 條 件 的 設 定

第1章 獨逸政策의 出發點

1969年 가을에 組閣된 現 聯邦政府는, 政府의 獨逸政策 (Deutschlandpolitik) 을 전개함에 있어서, 깊어져 가는 疎遠狀態를 막고 緊張과 負擔의 緩和에 寄與하기 위하여 優先的으로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하여 現實主義的 政策을 追求해야 한다는 事實에서 부터 出發했다. 동시에 聯邦政府의 政治的 目標는 獨逸民族이 자유로운 自決原則에 의하여 統一을 回復할 수 있는 歐洲의 平和秩序를 수립하기 위하여 長期的으로 노력하는에 있다.

이러한 現實主義 政策은 특히 美·蘇關係와 또한 全體的으로는 1966年以來 東·西關係를 決定해 온 緊張緩和努力의 맥락속에 적절히 配列되고 있다. 아울러 聯邦政府는 激化一路에 있는 民族的 分離狀態의 危險을 防止하며, 또한 獨逸聯邦共和國과 蘇聯關係, 獨逸聯邦共和國과 「폴란드」 關係, 그리고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 關係를 하나의 假條的關係 (Modus vivendi) 의 意味에서 實際 現存하고 있다는 現實狀況에 기초하여 規律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活用했던 것이다. 一面, 獨逸內에 第2의 國家로서 獨逸民主共和國이 존재한다는 事實과 歐洲의 既存 國境線을 존중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現實 (Gegebenheit) 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全體로서의 獨逸과 「베를린」에 대한 4大國責任의 存統과 「베를린」의 聯邦에 대한 긴밀한 附屬狀態, 그리고

獨逸民族의 存統과 民族的 單一性(Einheit) 및 自由(Freiheit)
를 그 目標로 指向하고 있는 基本法(Grundgesetz) 역시
이러한 現實(Wirklichkeit)에 속하는 것이다.

歐洲에 있어서 緊張解消를 위한 過程은 不可逆의 것이다. 그러
므로 聯邦政府는 처음부터 緊張解消政策(Entspannungspolitik)을
西方向盟國들의 努力과 밀접한 關係하에 一致시켜 나갔으며, 뿐만
아니라 이 緊張解消政策은 - 1970년 7월 15일 聯邦外相 「셸」
(Scheel)이 지적한 바와 같이 - 처음부터 "對話의 進展은 他
方에 積極的으로 影響을 미칠 수 있을 것" 이라는 점을 想定했
던 것이다.

第2章 独逸民族의 分離生活 (Auseinanderleben) 防止 및
共存 (Miteinander) 을 향한 並存 (Nebeneinander)
- 独逸内の 特殊關係 및 内独關係의 論理 - 東·西独
頂上會談을 위한 全權代表 接觸

“ 独逸聯邦共和國 과 独逸民主共和國이 수립된지
2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은 더욱 벌어져
가고있는 独逸民族의 分離生活 (Auseinander-
leben) 을 막아야 하며, 더 나가서는 共存
(Miteinander) 을 이룩하기 위한 並存
(Nebeneinander) 을 追求해야 할 것이다.”

(1969年 10月 28日 施政聲明에서,

聯邦首相 「브란트」)

1969년 10월 28일의 政府聲明을 보면, 이러한 緊張解消政策에
대한 標準이 설명되고 있다. (註 : 文書 1)

聯邦首相은 独逸民主共和國에 대하여 協商을 재개할 것을 제의했
다. 独逸에 있어서 並存을 거쳐 共存을 이룩하려는 試圖에서

聯邦政府는 分斷의 結果를 緩和시키고 深化되고 있는 分離生活를 막으며, 동시에 歐洲의 平和를 위한 一般的인 共同責任과 모든 歐洲民들의 利益에 副應할 수 있는 하나의 可能性을 洞察했던 것이다.

聯邦政府는 獨逸政策에 있어서 獨逸民主共和國이 獨逸內的 第2 國家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現實로 부터 出發할 容위가 있으며, 또한 獨逸民主共和國 政府와 同等權의 基礎下에 만날 容의가 있음을 闡明했다. 물론 將來의 並存을 위해서 위의 事實은 外國에서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연방政府는 獨逸民主共和國의 住民들에 대하여 國際交易과 文化交流의 利點을 減退시키지 않을 것을 분명히 강조했다. 獨逸聯邦共和國과 그의 동료국들을 獨逸民主共和國의 국제관계에 편입시키는 문제는 '東[베를린] 자신의 行動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聯邦政府는 다른 모든 國家들에 대하여 '獨逸聯邦政府는 더이상 國際關係에 있어서 獨逸民主共和國의 參與를 原則적으로 封鎖하지 않을 것임'을 周知시켰던 것이다. 友邦國家들은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이 상호 그들의 關係를 定立할 때까지는 獨逸民主共和國과 關係를 설정하게 될 協定을 延期(保留)할 것을 容용받았었다.

聯邦政府는 獨逸民主共和國이 第2의 獨逸國家로서 同等權利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함에는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聯邦政府는 兩獨逸國家間의 關係에 대하여 추진되고 있는 協定締結調整 過程에서 歐洲平和秩序의 範圍內에서 自決原則에 입각하여 獨逸問題를 해결한다는 窮極의 目標을 포기함은 결코 아니었다.

이에 대하여 聯邦首相은 다음과 같이 確言한 바 있다.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한 國際法上的 承認은 결코 考慮될 수 없다. 獨逸땅에 2개의 國家가 존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코 相互 (füreinander) 外國 (Ausland) 이 아니다. 그들의 關係는 서로 (zueinander) 特殊한 方法에 의해서만이 (nur von besonderer Art) 成立될 수 있다.”

聯邦政府의 聲明에 대한 하나의 重大한 反響이 1969년 12월 초 「모스크바」에서 부터 들려 왔다. 즉, 「바르샤바」條約 國家會議는 聯邦政府에 대하여 現實主義를 証明했으며 또한 獨逸聯邦共和國이 東歐諸國과 關係협정을 맺기전에 獨逸民主共和國을 承認해야 할 것이라는 종래의 要求를 抑制했다는 點이다.

1969년 12월 4일에 발표된 [바르샤바]條約國家들의 聲明에 호응하여, 8일후 뒤늦게 獨逸民主共和國 國家會議 (Staaterat) 議長兼 社會主義統一黨中央委員會 第1書記인 [발터 울브리히트] (Walter Ulbricht) 까지도 聯邦政府에 대하여 現實主義的 出發을 是認했다. 그러나 동시에 [울브리히트]는 政府聲明의 本質的 要素에 대해서는 혹독한 批判을 加했다. 즉, 獨逸民主共和國을 - 獨逸에 있어서의 特殊性을 존중하는 狀態에서 - 同等權을 지닌 第2의 獨逸國家로 취급한다는 協定提議에 대해서는 격렬하게 非難했다. 그것이 戰術的인 動機에서 나온 것이었을진대, 또는 그것이 뿌리깊은 不信에서 나온 것이었을진대, 社會主義統一黨은 所謂, "特殊한" (besondere) 關係라든가, 혹은 "內獨" (innerdeutsche) 關係라는 概念에 反對하여 대대적으로 계획된 [캠페인]을 벌리기 시작했다고 할 것이다. 聯邦政府는 獨逸內의 關係라는 特別한 事實 (Gegebenheit) 에 관하여 理解하고 있는 바를 명료하게 밝혔다. 聯邦政府는 獨逸民主共和國을 獨立國家로, 그리고 同等權을 지니는 條約對象 (Vertragspartner) 으로 간주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했다. 그러나 동시에 聯邦政府는 獨逸에 있어서 特殊한 政治的, 法律的 現實 (Gegebenheit) 을 考慮해야 할 必要性을 계속 강조했다.

(즉, 이는 4 大國權利, 兩國家의 憲法秩序 및 民族의 存続을 말함)

이와 같은 聯邦政府의 聲明은 1969 年 12 月 12 日 東獨國家會議
議長인 「발터·울브리히트」에 의하여 또다시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한 獨逸聯邦共和國의 " 後見者的 主張 " (Vormundschaftsanspr-
uch) 을 하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신랄하게 非難을 받았다.

즉, 「본」 當局은 " 外國이 아닌 存在 " (Nicht-Ausland-Sein)
라는 形式을 利用하여 「본」 當局의 單獨代表權이라는 越權과
「본」 當국의 主張을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하여 強要하려고 示威을
벌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 國際法上으로도 또한 實際로 無意味한 外國이라는 單語는 차라
리 광속으로 쳐박아버리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실 後見的 越權을 다소나마 교묘하게 은폐시킬 수 있을 것이
기 때문이다. "

1969 年 12 月 17 日에 내놓은 獨逸民主共和國의 條約案은 이러
한 傾向에 符合하는 것이었다. (註 : 文書 2)

「발터 울브리히트」는 聯邦大統領 「하이네만」 (Heinemann)
에게 보낸 添書에서, " 兩獨逸國家間의 平和的 並存 (Nebeneinan-

der-leben) 과 善隣關係의 設定 "은 現行 國際法上 公認된 規範을 土台로 하는 兩國關係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說明했다. "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同等한 關係 設定에 관한 條約案 "은 前文과 9個條項속에 獨逸民主共和國의 協商提議들을 포함시키고 있었다. 核心部分가운데에는 正常的인 同等關係의 設定, 武力拋棄, 安全 및 軍縮方案樹立 및 國際聯合 加入問題 등이 포함되고 있었다. 또한 모든 既存의 國境은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되었다. 그리고 " 獨立政治單一체로서의 西「베를린」의 地位 "가 확실히 기술되어야 하며, 獨逸聯邦共和國의 特定法律과 法令들은 止揚되어야 한다고 주장되었다. 兩國關係의 出發點은 外交關係의 수립이었다. 환언하면, 特定分野의 規定들은 달리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1970년 1월 19일 國際記者會見에서 「발터 울브리히트」는 이와 동일한 條約案을 설명했으며, 동시에 1970년 1월 14일의 聯邦政府의 施政報告에 대해서도 그의 立場을 밝혔다. 즉 聯邦政府의 특별한 要請에 대해서, 「울브리히트」는, 民族의 單一性에 全적으로 反對하는 立場에서 出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하나의 社會主義 獨逸民族國家 " (ein sozialistische deutschen Nationalstaat)로서의 獨逸民主共和國이라는 자신의 命題를 내세웠다.

그리하여 獨逸民主共和國은 聯邦政府의 聲明에 대하여 이를 抗議로서 對答했다. 그 抗議는 獨逸에 있어서 現存하는 實質的이고

法律的인 特殊性을 考慮할 것을 전혀 拒否하는 것으로 特徵지워지고 있었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聯邦政府는 獨逸民主共和國의 條約文案에 대하여 어떤 固有한 代案을 마련하지 않고 対応하기로 決定했다.

1970년 1월 19일 聲明을 통하여 聯邦政府는 다음과 같이 強調했다. "條約은 協商의 結果로서만 이루어 질 것이며, 결코 協商開始의 前提條件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聯邦政府는 獨逸民主共和國은 蘇聯이나 「폴란드」와 다름없이 行動할 것이라는 論理에서 부터 출발했다. 즉, 相互關係에 있어서 進展은 條約拒否라는 公式的인 對立立場을 통하여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註: 文書 4)

聯邦首相은 1970년 1월 22일 獨逸民主共和國 關係會議議長 (DDR-Ministerratsvorsitzender) 「슈토프」에게 보낸 書翰 (註: 文書 5)에서 모든 懸案問題들의 調整에 관련하여 兩政府間에 광범한 意見交換을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武力拋棄와 同等權關係 및 分斷된 獨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生活에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現實的인 問題들이 동시에 취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聯邦首相은 長官級의 對話로서 (Mit einem Gespräch auf Ministerebene) 協商을 시작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 長官級 對話를 위해 內獨關係省長官인

「에곤 프랑케」(Egon Franke)를 任命할 것이라고 闡明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1970년 2월 11일 獨逸民主共和國 閣僚會議
議長 「빌리 슈토프」(Willi Stoph)는 聯邦首相은 獨逸民主共和
國의 條約案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응수했다. 그리고 「슈토프」
首相은 兩政府首腦의 邂逅(eine persönliche Begegnung)
가 요청되고 있다고 밝혔다. 「슈토프」는 東「베를린」의 閣僚會議
(Ministerrat) 建物에서 만나 頂上會談(Gipfeltreffen)을
실현하자고 제의했다. (註: 文書 6)

1970년 2월 18일 聯邦首相은 이 제의에 동의했다. 그러나
연방수상은 이 頂上會談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술적인 細部, 事前準
備事項을 協議하고 最初의 頂上會談日程을 확정시킬 兩側의 全權代
表(Beauftragte)를 追加하자고 주장했다 (註: 文書 7)

드디어 1970년 2월 20일 兩側의 「텔레타이프」로 先發代表團
의 代表名單이 通報되었다. 기술적인 문제와 儀典上의 문제를 다
루기 위한 協議는 1970년 3월 2일 獨逸民主共和國의 閣僚會議
建物에서 開始되었다. 그러나 곧 聯邦首相의 여행通路를 選定하는
과정에서 政治的, 法律的 意味를 놓고 兩側이 공공연히 論爭을 벌
립으로 인하여 시간을 소비했다. 그러다가 1970년 3월 12일
드디어 兩政府의 首腦會議日字는 1970년 3월 19일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會談場所로서는 東獨에 所在하고 있는 「에르프르트」(Erf-
urt)로 정할 것에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第3章 「에르프르트」 頂上會談(1970.3)과 「캇셀」
頂上會談(1970.5) - 「슈토프」의 7個項目 原則, 「브란트」의
6個項目 原則 및 所謂 「캇셀」 20個項目 原則

“形式的인 文書만으로는 關係正常化에 하등
도움이 안된다. 이쪽에서든 저쪽에서든 공히
사람들은 正常化를 통하여 무엇인가 얻지 않
으면 안된다.” (1970年 3月19日 「에르프
르트」에서, 聯邦首相 「브란트」)

「에르프르트」 會談이 開催되었다. 그리하여 兩側은 그들의
基本立場을 公表했다.

독일민주공화국 關係會議 議長인 「발터·슈토프」 首相은 앞으로
있을 討議主題에 關해 獨逸民主共和國政府의 概念을 다음과 같이
要約했다.

(1) 國際法原則에 依거한 無差別의 正常的이며 同等한 關係를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에 設定하는일 그리고 온갖
形態로 主張되고 있는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의 单独代表權 主張의
拋棄.

(2) 他國과의 外交關係에 對한 不干渉, 「할슈타인」原則의 최종
적인 拋棄.

(3) 國際聯合憲章 第2條 4項에 副應하여 國際法上的 主体性和 領土的 保全 그리고 既存國境의 不可侵性에(대한 相互間의 無 制限 承認原則下에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에 武力을 拋棄하는 일 .

(4)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의 國際聯合機構 加入 提議 ,

(5) 核武器 保有 또는 여하한 形態의 核武器 獲得 노력의 拋棄 , 生物学武器와 化学武器의 生産 , 使用 및 貯藏의 拋棄 , 軍備用의 50% 引下 .

(6) 2次 世界大戰의 모든 殘滓 요소들을 必須的으로 除去함에 대하여 관련된 問題의 討議 .

(7)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한 獨逸聯邦共和國의 債務의 清算 및 獨逸聯邦共和國을 통한 報償 義務의 調整 . (註 : 文書 8)

한편 , 聯邦首相은 그의 論理를 전개하는 가운데 1970년 1월 22일 자신의 書翰에서 이미 獨逸民主共和國政府에 대하여 傳達한 바 있는 原則들을 再三 力說했다 . 그 原則들은 다음과 같다 .

(1) 兩國은 獨逸民族의 統一을 保全할 義務를 가진다 . 兩國은 相互 外國이 아니다 .

(2) 그 밖에는 " 국제법 " (Zwischenstaatlich

Recht)上 일반적으로 公認된 원칙들, 특히 差別行為의 除斥, 領土的 保全의 존중, 모든 懸案爭点들의 平和的 해결의무 및 雙方의 境界에 대한 존중의 原則들은 有效되어야 한다.

(3) 또한 條約當事者의 領土內에 존재하는 社會構造를 폭력으로 (gewaltsam) 變更시키지 않아야 할 義務도 여기에 속한다.

(4) 兩政府는 善隣的인 協力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특히 무엇보다도 專門技術協力協定을 위하여 노력할 때에 正府協定의 次元으로 協力促進이 전반적으로 確立될 수 있을 것이다.

(5) 全体로서의 獨逸과 「베를린」에 대한 4 大國들의 既存權利와 責任은 존중되어야 한다.

(6) 「베를린」의 內的狀況과 주변상황의 개선에 관한 協定을 마련하기 위한 4 大國의 제반 노력은 支持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實質的인 討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이 「에르프르트」頂上會談의 本質的 意義는 바로 頂上의 邂逅 그 자체에 있었다. 이제 많은 해가 지나는동안 凍結되어왔던 "獨逸問題"는 또다시 國際政治의 議事日程으로 옮겨 졌다. 獨逸國民들의 기대감은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公衆의 反應은 이런것이였다. 「에르프르트」頂上會談과 또한 더나가서는 1970年 5月 21日 「카셀」(Kassel)에서 頂上會談을 계속하기로 意見一致

를 보게 되었다는 사실은 곧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에 있어서 兩獨間에는 보다 緩和된 조건하에 여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보다 改善된 協力を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한 大衆의 기대감이 더욱 부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카셀」會談에 대한 聯邦政府의 概念은 「모스크바」와 「바르샤바」에서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었던 對話와 「베를린」문제를 위요하여 토의를 시작한 4大國會議 (Vier Mächte Gespräch)와 함께 보다 구체적인 協의를 誘導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환언하면, 聯邦政府의 概念은 결코 最大限의 要求主張을 固執하는 것이 아니라, 長期的 眼目에서 聯邦政府의 始終一貫된 立場을 지켜나가는 範圍內에서 必要한 융통성을 發揮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는 말이다.

이를 위하여 聯邦政府는 次期會談에 즈음하여 獨逸民主共和國側에 대해 무엇보다도 相互關係의 內的連繫性 (inner zusammenhänge)과 關係正常化 要素의 獨立性を 명백히 설명했던 것이다.

이러한 原則으로 어떠한 條約案이 다시 提出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同等한 關係協定을 위한 原則과 條約要素 (Vertragselemente)에 관한 聯邦政府의 概念要目은 提示되었다. 그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 所謂, "카셀" 20個項目 (20 Kasseler Punkte)이었다.

「카셀」 20 個 項目은 다음과 같다.

(1) 第 1 項目 : 自國의 憲法속에 民族의 單一性에 關하여 記述하고 있는 (ausgerichtet)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現存하는 不利益을 除去하기 爲하여 獨逸内の 2 國家間の 關係를 規制하고 , 兩國家의 住民間에 結束을 다지며 ,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目的에 寄與할 條約을 民族의 將來와 民族의 結合 및 平和의 利益을 爲하여 締結한다 .

(2) 第 2 項目 : 條約은 合憲的으로 立案된 形式으로 兩側의 同意를 얻기 爲해 兩側의 立法機關에 회부되어야 한다 .

(3) 第 3 項目 : 兩側은 人權의 原則 , 同等權의 原則 , 友好的인 共同生活 (Zusammenleben) 의 原則 및 國際法 (Zwischenstaatlichen Recht) 의 一般原則으로서 無差別의 原則下에 雙方關係를 定立해 나가려는 意志를 公表해야 한다 .

(4) 第 4 項目 : 兩側은 相互 如何한 暴力의 威脅이나 使用을 拋棄하며 , 또한 그들간의 모든 懸案問題들을 平和的 手段으로 解決할 義務를 진다 . 이것은 領土의 不可侵性과 國境의 尊重을 포함한다 .

(5) 第 5 項目 : 兩側은 그들의 國內主權 (ihre innere Hoheitsgewalt) 에 속하는 事項에 있어서는 各己 兩國家의 獨立性과

自主性を 尊重한다 .

(6) 第 5 項目 : 兩獨逸國家中 어느쪽도 다른쪽을 代行하거나 또는 代表할 수 없다 .

(7) 第 7 項目 : 條約締結雙方은 결코 獨逸땅에서 戰爭을 再發하지 않을 것을 宣言한다 .

(8) 第 8 項目 : 兩側은 民族 (Volker) 의 平和的 共同生活 (Zusammenleben) 을 妨害할 목적으로 結集된 모든 行動을 拋棄할 義務를 진다 .

(9) 第 9 項目 : 兩側은 歐洲安保의 增進에 寄與하는 軍縮과 軍備統制를 위한 모든 努力을 支持하려는 자신의 意志를 確認한다 .

(10) 第 10 項目 : 條約은 2次 世界大戰의 結果에서부터 出發해야 하며 , 獨逸의 特殊한 狀況과 또한 2개의 國家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의 民族에 歸屬된 것으로 理解하고 있는 獨逸人들의 特殊한 狀況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

(11) 第 11 項目 : 「 베를린 」 과 全体로서의 獨逸에 관한 4 大國들의 特別한 權利와 4 大國協定에 基因한 「 프랑스 」 共和國 , 大英帝國 , 美合衆國 및 社會主義蘇聯邦共和國에 대한 各己의 諸般 義

務는 계속 구애를 받지 않는다.

(12) 第 12 項目 : 「베를린」과 獨逸에 관한 4 大國協定은 尊重된다 . 동시에 西「베를린」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既存紐帶에 대해서도 通用된다 . 兩側은 「베를린」内部 및 「베를린」을 위요한 狀況의 正常化를 위한 4 大國의 노력을 支援할 義務를 스스로 부담한다 .

(13) 第 13 項目 : 兩側은 兩國家의 立法 (기관) 間에 어느 領域에서 충돌이 발생하는가를 檢査한다 . 이에 따라 兩側은 獨逸內에 있는 兩國家의 市民들에 대한 不便 (Nachteile) 을 해소하기 위해 충돌요소들이 除去되도록 노력한다 . 동시에 兩側은 各者의 主權 (Hoheitsgewalt) 은 各者의 國家領域에 局限한다는 原則에서 出發한다 .

(14) 第 14 項目 : 條約은 相互間의 往來를 넓히고 任意移住權 (Freizügigkeit) 을 追求하는 諸般措置를 構圖해야 한다 .

(15) 第 15 項目 : 離散家族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한다 .

(16) 第 16 項目：共同國境에 접한 區域과 地域에 대해서는 그곳에서 發生하는 문제들을 善隣的으로 解決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7) 第 17 項目：兩側은 相互利益이 되는 利益을 위하여 交通, 通信分野, 情報交換, 科學, 敎育, 文化, 環境問題 및 體育分野 등에 있어서 協力을 強化, 擴大시키며 동시에 細部事項에 관한 協商을 開始할 用意을 確認한다.

(18) 第 18 項目：兩側의 交易에 대해서는 既存의 協定들이 계속 有效한다. 交易關係는 더욱 擴張되어야 한다.

(19) 第 19 項目：兩政府는 閣僚級의 特命全權代表 (Bevollmächtigte im Ministerrang) 를 任命하고 特命全權代表의 常駐代表團을 위한 常設事務所 (Dienststellen für die ständigen Beauftragten der Bevollmächtigten.) 를 設置한다.

또한 特命全權代表와 全權代表部의 任務는 細目으로 規定되어야 한다. 그들에게는 該當 政府所在地에서 活動할 수 있는 可能性이 부여되며, 必要한 便宜提供과 特權이 保障된다.

(20) 第 20 項目：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國

國際機構의 加入과 國際機構에서의 協力を 規制하기 위하여 그들간
에 合意된 條約의 原則에 基礎하여 必要한 對策을 講究한다.

國際機構의 加入과 國際機構에서의 協력을 規制하기 위하여 그들간

에 合意된 條約의 原則에 基礎하여 必要한 對策을 講究한다.

國際機構의 加入과 國際機構에서의 協력을 規制하기 위하여 그들간

에 合意된 條約의 原則에 基礎하여 必要한 對策을 講究한다.

國際機構의 加入과 國際機構에서의 協력을 規制하기 위하여 그들간

에 合意된 條約의 原則에 基礎하여 必要한 對策을 講究한다.

國際機構의 加入과 國際機構에서의 協력을 規制하기 위하여 그들간

國際機構의 加入과 國際機構에서의 協력을 規制하기 위하여 그들간

에 合意된 條約의 原則에 基礎하여 必要한 對策을 講究한다.

國際機構의 加入과 國際機構에서의 協력을 規制하기 위하여 그들간

에 合意된 條約의 原則에 基礎하여 必要한 對策을 講究한다.

國際機構의 加入과 國際機構에서의 協력을 規制하기 위하여 그들간

에 合意된 條約의 原則에 基礎하여 必要한 對策을 講究한다.

國際機構의 加入과 國際機構에서의 協력을 規制하기 위하여 그들간

國際機構의 加入과 國際機構에서의 協력을 規制하기 위하여 그들간

에 合意된 條約의 原則에 基礎하여 必要한 對策을 講究한다.

第 4 章 独逸民主共和国의 法的 地位 問題를 위
한 協商의 爭点

“本人이 생각하고 있는 協約가운데에는 必히
우리들 國家間의 關係調整을 위한 原則들을 設
定할 條約이 포함된다. 聯邦政府는 이와같은
條約을 위해 一連의 原則과 內容을 發展시켜
왔다.”

(1970 年 5 月 21 日 「캄셀」에서,
聯邦首相 「브란트」)

聯邦首相은 兩國家間의 同等한 關係調整을 위한 所謂 20 個
項目의 原則과 條約要件들을 討議에 내 놓았다. (註 : 文書 14
및 上述한 20 個 項目) 聯邦政府의 提議에⁷ 대하여 独逸民主共
和國 閣僚會議 議長은 「에르프르트」(Erfurt)에서 있었던 것
과 同一한 演說로 1969 年 12 月 17 日의 條約案을 재차 提起했
다. 特히, 國際舞臺에 있어서의 独逸民主共和國의 主權과 同等한
地位에 대한 主張이 거듭 강조되었다. (註 : 文書 15)

聯邦首相은 相互關係를 調整함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人間關係
의 利益을 考慮해야 할 것인가 하는 問題에 관해서는 独逸民主

共和国이 아직도 아무런 言及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만약, 이에 관해서 어떤 구체적이고 적절한 답이 마련된다면, 그
때에는 時間이 흐름에 따라 자연 独逸民主共和国이 國際法上 承
認에 관하여 論하려고 할때에 겨냥하는 바도 자연히 解決될 수
있을 것이다. (註: 文書 16)

聯邦首相은 兩政府所在地에 兩側의 全權代表들이 常駐하여 活動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協商을 하자는 促求의 말
로서 結論을 맺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独逸民主共和国關係會議
議長은 되풀이하여 外交關係樹立을 위한 早速한 措置와 兩独逸国
家の 國際聯合加入措置를 主張했다. 独逸民主共和国에게 있어서는
政府首班以下水準의 協商을 위한 時点(Zeitpunkt)이 아직 成
熟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었다.

頂上會談의 종반에 접어 들어 独逸民主共和国은 우선은 "생각
할 여유" (Denkpause)를 갖자고 勸告했다. (註: 文書 17)

第 5 章 独逸聯邦共和国·蘇聯 条約；独逸聯邦共和国·

「폴란드」条約의 成立 및 4 大國 會談 進
展에 따른 独逸民主共和國의 協商態度 變化

“ 独逸聯邦共和國 政府는 独逸民主共和國政府와
하나의 協定 (Abkommen) 을 締結할 용의가
있음을 闡明하는 바이다. 이 協定은 独逸聯
邦共和國과 独逸民主共和國이 第 3 國들과 締結
하는 餘他の 協定과 마찬가지로 國家間에 通
用되며 拘束力을 지닌다. ”

(1970 年 8 月 12 日 , 「 모스크바 」 聲明 (Absi-
chtserklärung) 第 6 項에서)

1970 年 여름에 야기되고 있었던 外交政策上的 難點은 1970
年 8 月 12 日에 체결된 「 모스크바 」 条約의 署名問題였다.

1970 年 1 月부터 5 月까지 國務相 「 에곤 바르 」 (Staatsse-
kretär Egon Bahr) 는 蘇聯外相 「 그로미코 」 (Gromyko) 와
意見交換을 나누고 있었다.

平和条約上的 規定을 欠하고 있는 狀況을 감안할 때, 聯邦政
府의 입장에 있어서는 武力拋棄의 原則에 입각하여 独逸聯邦共

和國과 蘇聯間의 關係를 發展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일차적으로 중요한 과제였다. 兩側은 하나의 추상적인 武力拋棄 자체에 滿足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武力行使의 禁止와 밀접히 관련된 國境의 不可侵問題도 協商에 포함되었던 것이다. 이 協商은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의 國境問題도 결부시켰음은 두말할 나위없다.

歐洲의 實際的 現狀 (Tatsächliche Gegebenheiten)에 基礎한 하나의 잠정협정 (Modus vivendi Regelung)에 관한 合意는 致命的으로 重要한 것이었다. 물론 여기에도 聯邦首相이 「에르푸르트」 (Erfurt)에서 公式化했던 내용이 그대로 通用되었다. 그 公式化의 내용이란, "一方에 대해서는 現實의 認定을 要求하면서 동시에 또 他方에 대해서는 一方的인 現實의 變更을 要求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論理다.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의 關係 設定에 대해서는 兩國家 스스로만이 決定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에 대해 聯邦政府는 4大 戰勝國의 하나인 蘇聯에 대하여 東·西獨關係를 설정하기 위한 協定에 관한 聯邦政府의 見解를 설명하는데 注意를 쏟고 있었다. 그리하여 1970年 8月 12日의 獨·蘇條約과 관련하여 作成된 計劃聲明의 한부분에 이문제를 채용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 聲明書는 다음과 같이 논급하고 있다.

“ 獨逸聯邦共和國 政府는 獨逸民主共和國 과 하나의 條約을 체결할 用意가 있다. 이 條約은 獨逸聯邦共和國 과 獨逸民主共和國 이 第3國과 체결하는 餘他的 條約과 마찬가지로 國家間에 通用되며 동시에 拘束力을 가진다. 그러므로 獨逸聯邦共和國 政府는 獨逸民主共和國과의 關係를 完全平等의 原則, 不差別의 原則, 그리고 領內의 內政權限에 관계되는 問題에 있어서는 兩國家의 各己의 獨立性과 獨自性(主体性) 尊重의 原則등을 基礎로 하여 設定하려는 것이다. 獨逸聯邦共和國政府는 兩國家中 어느 나라도 外國에서 他方을 代表하거나 그의 이름으로 行動할 수 없다는 原則에 입각하여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의 第3國에 대한 關係를 展開해 나갈 것이라는 論理에서 出發하고 있다.”

여기에서 確立된 概念은 1971年 11月 29日 - 30日기간중 聯邦外相 「셸」(Scheel)이 「모스크바」를 訪問하고 있을때에 「콤무니케」의 일반적인 共同見解로서 또다시 固守되었다.

1970年 7月 16日 社會主義統一黨 中央委員會 第一書記 「발터·울브리히트」(Walter Ulbricht)는, 所謂 “생각할 여유의 시간”(Denkpause)이 持續되고 있는 것은 순전히 聯邦政府가 對蘇聯 武力拋棄協定の 署名에 必要한 유예기간에 달려 있는 것

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상 「모스크바」條約의 署名後에도 아직
이렇다할 協商의 進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1970年 10月 7日 獨逸民主共和國 第21周年 記念日에
행한 演說에서, 「빌리 슈토프」(Willi Stoph)는 “獨逸聯
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에 問題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
인가”를 밝힌바 있다. 그는 이들 兩國家間에는 하나의 “
國內”關係(Ein “inneres” Verhältnis)가 成立한다는 概念
에 대해서 反對의 立場을 吐露했으며, 더 나아가서는 “國家
간의 對立 그리고 社會體制間的 對立에 直面하게 되어서 接
近이 아닌 國境設定이라는 客觀的인 過程은 불가피하게 나타
났으며, 또한 아직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聲明
했던 것이다.

換言하면, 모든 社會秩序의 問題에 있어서 獨逸民主共和國이
“限界를 設定하는 것”(Abgrenzung)은, 獨逸民主共和國 首
腦部의 見解에 관한 한, 獨逸聯邦共和國과 條約을 체결하려는
條約政策(Vertragspolitik)의 수단에 必要한 일종의 平衡
錘(평형추)였다.

3週後인 1970年 10月 29日 - 30日에 이르러 2名의
獨逸民主共和國 密使가 파견되어 그들의 願에 의해 聯邦首相

室에서 첫번째 事前協議를 가졌다.

獨逸民主共和國이 意見交換을 시작하기 위하여 중전의 態度를 바꾸게 된 것은 필경 「모스크바」條約의 締結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獨逸民主共和國의 態度變化는 무엇보다도 「베를린」에 관한 4大國會談으로 곧 나타난 進展에 크게 影響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4大國의 意見統一이 아직도 明確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1970年 가을에 이르러서는 4大國이 「베를린」通行의 問題의 細部事項을 규제하도록 兩獨逸國家에게 權限을 위임하게 될지 모르는 가능성이 처음으로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獨逸民主共和國은 그들의 見解에 따라서 모든 上位의 4大國 責任에 의하여 구속받지 않는 通行協定(西獨과 「베를린」 <西伯林>간의 通行協定)을 위한 獨逸民主共和國의 管轄권을 명백히 밝히며, 또한 聯邦共和國로 부터 獨逸民主共和國으로 通行하든지 또는 獨逸民主共和國을 거쳐 第3國으로 往來하든지간에, 「베를린」通行과 기타의 交通往來사이에는 하등의 차이가 성립되지 않도록 해결하려는 目標을 두고 있었다.

1970年 10月 29日 부터 30日까지의 기간중 事前協議에 관해 발표한 共同聲明은, "中欧의 緊張解消 調整에 기여하며 동시에 利益

이 될 수 있는 // 제반문제에 관한 意見交換을 공식 통로를 통하여 유도할 것을 合意했다고 강조했다. (註: 文書 18)

1971年 3月에 開催되었던 蘇聯共産党 第24次 党大会와
1971年 6月, 「에리히 호네키」 (Erich Honecker)가
이끄는 現執權黨인 社會主義統一黨 第8次 党大会는 다음과 같은
前兆를 밝혀주고 있었다. 그 징후란 蘇聯과 獨逸民主共和國은
既存의 「베를린」協定과 獨波條約, 獨蘇條約間의 相互關係를 現
實로서 (als gegeben) 간주하며, 그 다음 段階의 措置로서
「베를린」에 관한 4大國協定 (Viermächte Abkommen)의 締結
을 注視하고 있었다는 事實이다. 그리하여 獨逸民主共和國은 獨
逸聯邦共和國과의 장기적 局面의 對話와 協商을 준비하기 시작
했다.

第6章 「바르·콜」會談(兩獨國務相會談)과 通行
協商(兩獨遞信省代表會談)

“에곤 바르(Egon Bahr) 獨逸聯邦共和國 聯邦首相室所屬 國務相과 「미카엘 콜」(Michael Kohl) 獨逸民主共和國關係會議所屬 國務相은 11月 27日 金曜일에 公式的인 意見交換을 위해 會同했다. 對話는 獨逸民主共和國의 關係會議建物에서 進行되었다. 意見交換을 繼續하는 가운데 合意가 이루어졌다”
(1970年 11月 27日 共同聲明에서)

그리하여 所謂 “바르~콜會談”(Bahr / Kohl Gespräch)
(註: 文書 19)의 第1次 會談으로서 일련의 對話가 始作되었다.
이 對話는 2年の 歲月이 흐르는 동안 60餘回의 會晤를 통
해 通行協定(Transitabkommen)과 交通條約(Verkehrsver-
trag)의 체결을 유도했으며 終局적으로는 基本條約의 체결을
가져왔다.

우선은 이같은事態發展으로 눈에 띄게 認識되는 것은 아직 別로 없었다. 兩側 代表團은 계속 「본」과 東「베를린」에서 會同했다. 聯邦政府側에서는 聯邦首相室과 內獨關係省 및 交通省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과 外務省이 참여했다. 交通通行問題가 重要問題로서 前面에 「클로즈업」되어 나타났다. 聯邦政府는 勿論 獨逸民主共和國 政府와 마찬가지로 여하한 모든 實際的인 意見差異에도 不拘하고 對話를 계속시키는데 關心을 쏟고 있었다.

그러나 聯邦政府는 特權的 「베를린」通行協定은 獨逸聯邦共和國와 獨逸民主共和國間의 一般通行協定으로 부터 公事적으로 分離되어야 한다는데에 合意하기전에라도 一般通行問題에 관한 意見交換의 단계를 本格的인 協商의 단계로 옮겨도 좋다는 立場에서 사태를 보지는 않았다. 동시에 聯邦政府에게 있어서는 「베를린」通行 (Berlin-Zugang) 을 保障하기 위한 4大國의 既存責任이라는 原則에 基礎하여 「베를린」通行問題에 관한 하나의 協定 (Regelung) 을 兩獨逸國家를 대상으로 施行한다는 것은 決定的으로 重要한 것이었다. 드디어 1971年 9月 3日 「베를린」에 관한 4大國協定 (Viermächte-Abkommen) 이 署名되었다. 「베를린」通行協定の II A 部分에서는 2節로 記述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베를린」의 西方區域 (Westsektor) 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民間通行에 관련된 구체적 細項規定 (Konkrete Regelungen) 들
에 대해서는 現 獨逸當局들에 의해 合意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
었다. (註 : 文書 20)

그리하여 「베를린」 (西伯林) 과 聯邦領域間的 通行往來協定에
관한 兩獨逸國家間的 本格的인 協商을 위한 前提條件들이 成立하
게 되었다. 이제 協商代表團은 人的 通行往來問題와 物的 通行
交流問題 등의 複雜한 個別問題들을 討議하는 專門業務陣으로 擴大
改編되었다. 동시에 4 大國協定の 合意와 더불어 1971年 9月
30日에는 所謂 " 獨逸聯邦共和國체신省代表團과 獨逸民主共和國체
신省代表團間的 協商에 관한 議定書 " 가 署名되었다. 이 議定書
의 관계規定속에는 「베를린」도 포함되고 있었다. (註 : 文書 22)

通行問題協商에 있어서는 1971年 10月중순경 며칠동안 실무회
의 (Arbeitssitzung) 가 계속되었다. 이와 병행하여 「베를린」
上院과 독일 민주공화국정부는 4 大國協定 附錄 III (프랑스, 英國
및 美國政府에 보내는 蘇聯政府의 통지문 :
Mitteilung der Regierung der Union der Sozialistischen
Sowjetrepubliken an die Regierungen der Französischen
Republik, des Vereinigten Königreichs and der Vereinigten
Staaten Von Amerika) 에 의거하여 西「베를린」시민의 訪問規

定과 地域通行交流 (Gebietsaustausch) 에 관하여 토의했다 .

公公然하게 이제 兩國家代表團의 실제적 會同은 하나의 日常的인 현상처럼 되어가고 있었다 .

1971년 12월 11일 4대국협정에 관한 兩獨逸國家의 부속협정 (Zusatzvereinbarung) 에 서명한 후 연방정부는 필경 만족할만한 「베를린」協定으로 인하여 자신의 요구사항들이 充足된 것으로 간주했다 . 그리하여 「모스크바」조약과 「바르샤바」조약의 비준을 서둘렀던 것이다 . 通行協定 (Transit Abkommen) 은 1971年 12月 17日 (註 : 文書 27) 에 서명되었으며 , 「베를린」上院 (Senat von Berlin) 과 獨逸民主共和國 政府間의 協定 (Vereinbarung) 은 1971年 12月 20日 (註 : 文書 29 参照) 에 서명되었다 . 獨逸民主共和國은 이미 復活節과 五旬節 (성명강림제) 을 위하여 通行協定과 「베를린」上院과 東獨間에 締結한 협정 내용가운데에서 사전예견되었던 緩和措置를 일방적으로 보장했고 또한 東方條約들이 비준된 이후 , 1972年 6月 3日 (註 : 文書 32) 최종議定書가 서명되자 드디어 4大國協定과 부속협정들이 發効되었던 것이다 .

「베를린」 通行者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通行協定の 意義는 交通關係發展史와 더불어 本 報告書의 第二篇 (現實

關係의 發展過程)에서 詳論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베를린」에 대한 4대국협정과 通行協定の 기본적인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의 정치관계 발전과정도 이러한 조약상의 조정을 통해 결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第 7 章 兩 獨 協 商 的 成 果

“經驗은 그밖에도 獨逸民主共和國 과의 協商
의 成果는 人間生活의 便宜問題에 있어서
變化를 가져 올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
(1972年 5月 10日 獨逸聯邦議會에서, 聯邦
首相 「브란트」)

통행협정은 하나의 첫걸음이었다. 4대국협정과 법적, 현실적 연결 관계를 밀접하게 유지함으로써 이와같은 최초의 정부협정을 촉진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發生條件은 그후 수반된 交通條約(Verkehrs Vertrag) 즉,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에 締結된 최초의 국가조약을 둘러싸고 진행된 협상과정에서는 더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그후 1년에 걸친 의견교환과정에서는 여러가지 通行上의 問題點들이 취급되었다. 이에는 法律上 보장된 제반원칙을 토대로 양국가의 상호 出入國과 通行(in und durch)을 규제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되고 있었다. 연방정부는 우선적으로 雙方의 여행

往来에 (Reiseverkehr) 있어서 실질적인 편의 및 제한緩和
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했다. 독일민주공화국은 条約
(註 : 文書 31 參照) 을 서명하기에 앞서 이와 같은 완화조치를
확인했다.

1972年 9月 22日 独逸聯邦議會는 反对投票없이 通行条約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条約은 独逸民主共和国의 緩和措置 發表
와 함께~1972年 10月 17日을 기해 発効하게 되었다.

협상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명해 주었다. 즉, 兩
独逸國家는 서로 다른 정치적, 법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難題를
상호 조정할 수 있는 상황에 와 있다는 사실이다. 分斷以後
처음으로 西独住民들은 独逸民主共和国에서 살고 있는 親知의
招請에 의해서도 独逸民主共和国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물
론 觀光여행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특별한 가족상의 사
유가 있을 경우에는 独逸民主共和国市民은 연령에 구애됨없이
独逸聯邦共和国에 거주하고 있는 그의 친척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조약업무의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本 報告書의 「 通行制度 및
交流往来 」 관계의 項目에서 詳論하게 될 것이다.

第8章 同等權의 原則, 國際聯合憲章의 尊重의
原則, 武力拋棄의 原則 및 獨立性的의
原則에 의한 善隣關係 發展은 協商의 礎石

“여러분들은 알고 있다.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 그리고 본인이 말하
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 나와 그
들은 이렇게 말한다. 대부분의 독일민주공화
국시민들은 「모스크바」조약과 「바르샤바」조
약 그리고 동서독협정내용속에 沈積되어 있는
우리들의 정책을, 독일내의 상황문제를 개선시
키며, 상호 또다시 보다 접근할 수 있을 분
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독일민족의 理想
은 放棄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방기될 필요
도 없을 것이라는 하나의 희망으로서 주목하
고 있다.” (1972年 5月 10日 獨逸聯邦
議會에서, 聯邦首相 「브란트」)

연 방정부는 1972年 초에 「모스크바」조약과 「바르샤바」조약

의 批准을 둘러싸고 벌어진 의회의 토론을 계기로 다시한번 연방정부가 「캇셀」會談에서 천명한 입장을 해명하고, 오해의 의구심을 払拭시키기 위한 기회를 捕捉하게 되었다.

1972年 5月 10日 연방수상은, 바로 수일전에 서명한 通行 条約 (Verkehrsvertrag) 에 관해 언급하면서, 상호관계의 수립을 위한 基本原則에 관하여 行政府는 의견교환을 할 용의가 있다고 확인했다. 연방정부에게 있어서 이와같은 条約작업의 難點은 여전히 周知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연방정부는 협상의 출발을 위한 好機를 期約하고 있었다. 한편, 独逸民主共和国은 그들대로 새로운 강조점을 설정하고 있었다. 그 강조점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独逸社会主義統一党 (SED) 中央委員會 第一書記 「에리히 호벡카」 (Erich Honecker) 는 1972年 4月 18日 「소피아」 (Sofia) 에서 行한 한 演說에서, "独逸民主共和国은 「모스크바」 조약과 「바르샤바」 조약이 비준되고 난후에 정상적인 선린우호관계수립에 관하여 의견교환을 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附言했다. "본인이 여기서 특히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의 발전이 유도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 발전은 独逸民主共和国과 独逸聯邦共和国間의 平和的

並存 (Nebeneinander)에 통하며 또한 平和의 利益과 양국가 시민의 利益에 부합되는 하나의 共存 (Miteinander)을 바라 볼 수 있는 정상적인 선린우호관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1972年 5月 17日에는 獨逸聯邦議會의 3大政黨에 의한 決議案 (1972.5.10)이 반대투표없이 採択되었는 바, 이 결의안 속에서는 獨逸政策과 東方政策의 일반적인 原則들이 확고히 견지되고 있다. (註: 文書 10)

本 決議案의 第10項 (Ziffer)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고 있었다. 독일연방공화국은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의 關係正常化를 옹호한다. 독일연방공화국은 緊張緩和와 善隣關係의 원칙이 兩獨逸部分의 人間關係와 제도部門에 충분히 적용될 것이 라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東方條約과 4大國協定이 6月初부터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한 후, 1972年 6月 15日에 이르러 國務相「바르」(Bahr)와 「콜」(Kohl)은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간의 關係正常化에 관한 의견교환을 위해서 만나게 되었다. 여러차례 회담을 진행하는 동안 兩國家의 將來問題를 위해 중요시되는 問題들은 모두 토의되었다. 동시에 때때로 他國의 兵力 (Streitkräfte)을 표적으로 하여 겨냥된 宣傳의 問題도 역시 토론되었다.

하나의 約定 (Vereinbarung) 에 기초하여 " 独逸軍放送局 935 " (Deutsche Soldatensender) 는 선전 방송을 중단했으며 동시에 聯邦軍당국은 선전비라氣球 살포活動을 중지했다.

1972년 8월 9日 聯邦閣議의 國務相 「바르」 (Staatssekretär Bahr) 는 공식적인 協商의 책임을 受任했다.

独逸民主共和国은 兩國의 國際聯合同時加入을 촉구했으며 또한 본질적인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大使 (Botschafter) 를 교환함으로써 外交關係를 즉각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이 두가지 要求主張을 거부했다. 결국 独逸民主共和国은 그들이 제시한 前提條件을 포기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했다.

聯邦政府는 全体独逸에 대한 4 大國責任의 存統과 관련하여 추구되는 關係協定이 지니는 假條約關係 (Modus Vivendi) 의 성격을 강조할 것과, 民族의 持續性을 위한 責任性을 侵害하지 않을 것과 그리고 國家關係의 秩序를 各種 生活領域上 실질적인 정상화의 명확한 出發에 연결시키는 것은 불가피한 일로 간주했던 것이다.

雙方의 용의성에 따라서 同等權의 原則, 國際聯合憲章의 目標 및 諸原則에 대한 尊重의 原則, 武力拋棄의 원칙 및 兩國의 獨立性의 原則에 의거하여 정상적인 善隣關係發展을 설정함은 그자체가 협상

을 위한 하나의 일반적인 出發의 基礎를 마련해 주는 것이었다.
정상적인 善隣關係의 발전을 설정하기 시작한 것은 1972년
8月 16日 부터였다.

第9章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의 基本
關係에 관한 條約(所謂, "基本條約") 및
正常化를 위한 道程

"본인은 兩國家間의 새로운 관계는 그 속에
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작용하
게 되리라는 본인의 기대와 확신에 찬 희망
을 표명하고자 한다. 우리들은 並存(Nebene-
inander)을 조직화했으며, 앞으로 共存(Mit-
einander)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1972年 11月7日 會談閉幕 聲明에서, 聯邦
首相 「브란트」)

1972年 12月 21日에는 所謂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

和国間の 基本關係에 관한 条約"이 東「베를린」에서 서명되었
다. (註: 文書 41)

연방정부는 한 聲明속에서 協商을 타결시키고 기왕에 제기된
조약작업을 마무리짓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실히 천명
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戰後 獨逸의 역사는 계속 深化되어가는 民族의 分離現狀으
로 特徵지어져 왔다. 이제 이 民族은 각기 다른 同盟體에 속
한 적대적 社會體制가 되어버린 두개의 國家속에서 살고 있다.
더욱 벌어져가는 分離生活(Auseinanderleben)을 防止하며, 緊
張의 解消에 기여하고 또한 사람들간에 共同體歸屬意識을 다져나
갈 現實主義的 정책의 목표는 동등권의 원칙에 입각하여 하나의
조약을 성립케 할 수 있다. 만일 일방이 타방에 대해 그들의
目的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같은 조약은 실현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본질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이러한 目標의 相異點
이 本質的으로 존재하고 있음은 결코 이와 같은 조약을 통해 소
멸되는 것은 아니다.

獨逸聯邦共和國은 조약에 서명하기에 앞서 적절한 方式으로 이
조약은 基本法(Grundgesetz)의 目的에 모순되지 않는다는 點
을 천명했다. (註: 獨逸의 單一性을 위한 書翰文書는 条約署名日
인 1972年 12月 21日 獨逸民主共和國政府에게 수교되었다.)

연방정부는 계속하여 긴밀한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그의 同盟
국들과 協商會談을 이끌었다. 연방정부는 同盟국들과 더불어 緊
張解消政策은 本條約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平和를 위해서도
필요하며 또한 同盟의 利益에도 부합된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兩國獨逸國家는 조약의 비준 후에 國際聯合의 會員國이 될 것을
바라고 있었다. 아마도 양국은 동시에 加入신청을 하게 될 것
이다. 獨逸聯邦共和國의 「유엔」가입신청을 위한 前提條件은 獨逸聯
邦議會의 사전승인이다. 상호관계에 있어서 조약당사자는 國際연합
憲章의 제반 목적과 원칙에 의해 규율받게 될 것이다. 그중에서
특히 特許중인 폭력포기, 自決權 및 人權尊重의 原則등이
이에 속한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에 우선하여 歐洲平和의 保全을 위하여
중요한 정치적 問題에 관한 協議의 合議는 지금까지의 歷史처럼
특수한 독일적 분쟁때문에 부담을 加重시키는 대신에, 국제적 문
제의 해결을 촉진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2) 本條約은 獨逸聯邦共和國의 法律的 見解와 완전히 意見一致
를 이루고 있다. 말하자면, 本條約은 基本法의 秩序에 相應하고
있는 것이다. 4大國의 權利와 責任은 조약에 의해서 하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註: 兩國는 西方 3 大國과 蘇聯에 각각 발송한 覚書에서 이를 확인했다. 또한 4 大國 역시 獨逸聯邦共和國이 계획한 국제연합가입문제와 관련해서 작성한 聲明書 <1972. 11.9. 文書: 40 참조>내용에서 4 大國의 權利와 責任의 存続을 언급했다.)

第 9 條에 대한 說明과 書信交換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명백해졌다. 즉, 獨逸民主共和國이 국제무대에서 同等한 地位를 누린다는 사실은 결코 "또하나의 獨逸國家는 外國이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見解가 허약하다는 논리와 동일시될 순 없다는 말이다. 그에 따라서 우리들은 條約當事者와 大使를 交換하지 않고 常駐代表를 交換하는 것이다.

한편 本條約은 공식적으로 수년전부터 모든 條約當事者들이 異論의 여지를 제기할 수 없는 事實이 무엇인가를 확인했는데, 곧 獨逸民主共和國은 獨逸聯邦共和國의 한 부분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이다. 이제 獨逸民主共和國은 대내, 대외문제에 스스로 고 유책임을 가지는 하나의 독립국가로 존재하고 있다.

本條約은 國籍問題나 財産問題를 規制하지 않는다. 따라서 兩地域에서의 法的 地位는 관계하지 않는다.

條約이 가져온 특히 중요한 결과의 하나는 獨逸民主共和國內에

장차 常駐할 聯邦共和國 代表는 「베를린」(西伯林)에 대한 利益을 대변한다는 점과 또한 兩國家間에 체결되는 協定들은 「베를린」(西伯林)에 관한 4大國協定과 符合하여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確證한 사실이다.

(3) 法的 利害關係를 保護하는 가운데 政治的 關係를 規定하는 것은 실제문제에 있어서 協力을 도모하기 위한 前提要件인 것이다. 經驗이 가르치는 바로는 法的 利益의 保護없는 政治的 關係의 協定은 이룩될 수 없다.

本條約은 일련의 進展을 이룩하고 있다. (註: 條約의 第7條 1項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兩側의 關係정상화과정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인도주의적 문제를 취급할 용의를 천명한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離散家族結合과 旅行便宜를 위한 書信交換이 될 것인바, 이것은 條約의 효력발생과 더불어 실현될 것이다. 제반 前提條件이 설정됨에 따라서 장차 夫婦가 상봉케 되며, 父母들이 그들 子女들을 만날 수 있게 되며, 할아버지가 孫子를 보러갈 수 있게 되고 또한 東獨과 西獨에 살고 있는 獨逸人들 사이에 結婚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人的 往來를 爲해 4개소의 國境通路가 開放될 것이다. 獨逸 民主共和國에 接境되어 있는 附近地域에 位置한 56개 郡地區 (Kreisen) 의 650萬 獨逸聯邦共和國住民에게는 獨逸民主共和國의 54개 相應地區에 여행할 수 있는 特別旅行可能性이 開進되었다. 그들은 年間 30日의 範圍內에서 종래에 가능했던 여행에 附加하여, 觀光旅行目的이나 또는 친척과 親知訪問을 목적으로 신청함으로써 既合意된 獨逸民主共和國地域의 체류기간으로 3개월에 9회를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西「베를린」 市民을 爲해 몇개월전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즉시 방문" (Sofortbesuche) 協定에 符合되는 것이다. 역방향에서 보더라도 便宜는 豫見된다. 즉, 장차 을 白銀時代와 黃金時代는 바로 이러한 긴급한 家事問題에 歸屬되며, 이러한 긴급한 家事문제를 緣유로 하여 獨逸民主共和國 住民들은 獨逸聯邦共和國으로 往來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신청권리를 가지는 獨逸民主共和國 市民의 範圍는 異父母의 兄弟子妹에 對해서 까지도 擴大된다.

鐵道 및 內陸航行에 의한 通行 (Transitverkehr) 에 있어서 는 장차 書面신청이 開進될 것이다. 「베를린」 通行을 제외하고는 通過旅行은, 獨逸民主共和國의 여행사무소가 사전에 써넣을 경우에는, 獨逸民主共和國內의 訪問에 對해서 까지 중단조치될 수 있다.

앞으로는 獨逸聯邦共和國로부터 出發한 貨物선이 獨逸民主共和國의 港口에 寄港할 경우 승객들은 陸地에 上陸할 수 있게 된다.

西方에서부터 東方으로 여행, 왕래할 경우에 있어서는 영화필립, 사진관, Dias 「디아스」, 사진복사기 및 「레코오드」판등에 대한 반입 금지조치가 철회될 것이며, 종래에는 최대 500그램까지만 허용하던 커피반입량이 최고량 1,000그램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다.

東獨으로부터 보낼 수 있는 贈物郵送을 위한 自由限度額은 전 반적으로 30 마르크에서 부터 100 마르크(東獨)로 올리게 되며, 직물류의 輸出禁止도 해제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類의 發送은 60 마르크(東獨)의 價格을 초과할 수 없다.

이 條約과 관련하여 兩國은 言論人들의 活動可能性을 改善하는데 대해서도 合意에 도달했다.

附屬議定書(Zusatzprotokoll)에 있어서는 業務領域에 대한 將來의 協力範圍가 규명될 것이다.

條約署名後 하나의 委員會는 兩國間의 境界標識作業을 再考하며 필요한 곳에서는 整備를 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지금까지 境界地域에 居住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현저한 不利益을 가져왔던 界間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方案들을 상정하게 될 것이다.

「발트」해로 부터 「베에멘」山脈(Böhmerwald)에 이르는 경계를 연하여 발생하는 수많은 그러나 분명 사소한 문제들은 필

경 정리되는 방향으로 유도될 것이다.

기존협정의 법적 토대에서 交易關係는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미 兩側에게 利點을 가져다 주었던 우편 및 채신교류에 대한 기존협정과 경험은 하나의 포괄적인 協定속에서도 적용될 것이며, 이 포괄협정에 대해서는 곧 協商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註: 協商은 1972年 12月 7日에 개시되었음)

当局間에 진행되어 온 기존 교류는 계속될 것이며 가능한 限 더욱 促進될 것이다. 이와같은 分野에 있어서도 역시 法律上的 權利補助領域(Gebiet der Rechtshilfe)에 대한 하나의 協定으로 편의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非商業的인 支払去來 및 滯算去來의 주요영역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주요 영역에 있어서는 社會的 觀点이라는 독특한 次元에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衛生 制度分野, 科學 및 文化協力分野, 環境分野, 體育關係促進, 書籍 및 雜誌의 相互購入 및 「라디오」와 「텔레비전」製作에 관한 協定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통털어서 볼 때, 하나의 방대한 「프로그램」이라 할만한 것이며 결코 完全無欠性에 대한 主張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協商과 協定체결을 통한 현실적인 實

現이 이루어지려면 아직도 몇년은 더 所要될 것이다.

정상화를 향한 道程은 결코 가까운 길은 아니다. 그러나 그 길은 지금 열려져 있는 것이다.

第 10 章 斷絶과 敵對關係로 부터 善隣關係로

“斷絶 (Nicht-Beziehungen) 과 敵對關係 (Feindseligkeit) 로 점철된 수많은 해가 지난 이제, 兩獨逸國家의 국민들과 정부는 서로 같이 親交 (Umgang) 를 터득하고 배워야 한다. 苦難과 갈등요인들이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순 없다. 獨逸聯邦共和國政府는 獨逸民主共和國과의 關係發展을 위한 계반 原則을 세우고 정치, 法律的으로 이를 名實相符하게 실행하며, 동시에 兩國家 住民들이 利益에 부합되는 條約을 마련할 方針이다.”

(1973. 1. 18 獨逸議會에서 행한 施政說明에서, 聯邦首相 「브란트」)

聯邦政府는 1972年 12月 21日에 체결된 條約(東·西獨基本條約)의 제1條에 명시된 善隣關係에 대한 容의성이 實證되어야 한다는 事實을 銘心하고 있다.

原則上의 問題에 있어서 限界의 設定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換言하면, 政治的 對立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住民들간에는 점차 意思疎通의 폭을 넓혀 나 갈 수 있는 可能性이 開進될 것이다.

聯邦政府는 실질적이고 인도주의적 問題들을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특별한 意味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基本條約 제7條를 完結시키는 과정에서 廣範하게 계획된 條約政策에 따라서 하나의 善隣關係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項目들이 附屬議定書(Zusatzprotokoll)와 書翰交換(Briefwechseln)내용에 수록되었다. (第一篇 完譯)

* 註 : 文 書 目 錄

- (1) 文書 1 : (28 Oktober 1969) Regierungserklärung von Bundeskanzler Willy Brandt - Auszug -
- (2) 文書 2 : (17 Dezember 1969) Schreiben des Vorsitzenden des Staatsrates der DDR, Walter Ulbricht, an Bundespräsident Dr. Gustav Heinemann (Mit Anlage)
- (3) 文書 3 : (19 Dezember 1969) Schreiben von Bundespräsident Dr. Gustav Heinemann an der Vorsitzenden des Staatsrates der DDR, Walter Ulbricht
- (4) 文書 4 : (19 Januar 1970) Erklärung der Bundesregierung zur Pressekonferenz des Vorsitzenden des Staatsrates der DDR, Walter Ulbricht
- (5) 文書 5 : (22 Januar 1970) Schreiben von Bundeskanzler Willy Brandt an den Vorsitzenden des Ministerrates der DDR, Willi Stoph
- (6) 文書 6 : (11 Februar 1970) Schreiben des Vorsitzenden des Ministerrates der DDR, Willi Stoph, an Bundeskanzler Willy Brandt
- (7) 文書 7 : (17 Februar 1970) Schreiben von Bundeskanzler Willy Brandt an den Vorsitzenden des Ministerrates der DDR, Willi Stoph

- (8) 文書 8 : (19 März 1970) Grundsätzliche Ausführungen des Vorsitzenden des Ministerrates der DDR, Willi Stoph, anlässlich des Erfurter Treffens
- (9) 文書 9 : (19 März 1970) Grundsätzliche Ausführungen von Bundeskanzler Willy Brandt anlässlich des Erfurter Treffens
- 10) 文書 10 : (19 März 1970) Gemeinsames Kommuniqué über das Treffen in Erfurt
- 11) 文書 11 : (29 April 1970) Vereinbarung über die Berechnung und Verrechnung der im Post- und Fernmeldeverkehr zwisch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genseitig erbrachten Leistungen (mit Anlage)
- 12) 文書 12 : (21 Mai 1970) Erklärung des Vorsitzenden des Ministerrates der DDR, Willi Stoph, Zu Beginn des offiziellen Gesprächs mit dem Bundeskanzler in Kassel
- 13) 文書 13 : (21 Mai 1970) Erwiderung von Bundeskanzler Willy Brandt auf die Erklärung des Vorsitzenden des Ministerrates der DDR

- (14) 文書 14 : (21 Mai 1970) Grundsätzliche Ausführungen von Bundeskanzler Willy Brandt in der Vormittagssitzung des Kasseler Treffens
- (15) 文書 15 : (21 Mai 1970) Grundsätzliche Ausführungen des Vorsitzenden des Ministerrates der DDR, Willi Stoph, in der Vormittagssitzung des Kasseler Treffens
- (16) 文書 16 : (21 Mai 1970) Ausführungen von Bundeskanzler Willy Brandt in der Nachmittagssitzung des Kasseler Treffens
- (17) 文書 17 : (21 Mai 1970) Ausführungen des Vorsitzenden des Ministerrates der DDR, Willi Stoph, in der Nachmittagssitzung des Kasseler Treffens
- (18) 文書 18 : (29 Oktober 1970) Mitteilung des Presse- und Informationsamtes der Bundesregierung über eine Vereinbarung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19) 文書 19 : (27 November 1970) Kommuniqué über den Meinungsaustausch zwischen Staatssekretär Dr. Kohl und Staatssekretär Bahr

- (20) 文書 20 : (3 September 1971) Viermächte - Abkommen (mit den Anlagen I, II, III und IV)
- (21) 文書 21 : (3 September 1971) Briefwechsel der Botschafter der drei Westmächte mit dem Bundeskanzler
- (22) 文書 22 : (30 September 1971) Protokoll über Verhandlungen zwischen einer Delegation des Bundesministeriums für das Post- und Fernmeldewes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einer Delegation des Ministeriums für Post- und Fernmeldewes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23) 文書 23 : (30 September 1971) Vereinbarung über die Errichtung und Inbetriebnahme einer farb-tüchtigen Richtfunkstrecke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24) 文書 24 : (14 Dezember 1971) Brief des Bundeskanzlers an die Botschafter der drei Westmächte in Bonn
- (25) 文書 25 : (15 Dezember 1971) Briefwechsel des Abteilungsleiters im Bundeskanzleram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r. Ulrich Sahn, und des Abteilungsleiters beim Ministerra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Karl Seidel, über die

Ausfertigung und Behandlung von Warenbegleitschei-
nen für zivile Güter im Transitverkehr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Berlin (West)
(mit Muster, Anlage und Protokollnotiz)

- (26) 文書 26 : (16. Dezember 1971) Antwortschreiben der Botsch-
after der drei West-mächte an den Bundeskanzler
- (27) 文書 27 : (17. Dezember 1971)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en
Transitverkehr von zivilen Personen und Güter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Berlin (West) (mit Anlage und Protokollvermerken)
- (28) 文書 28 : (18. Dezember 1971) Schreiben der Alliierten
Kommandatura an den Regierenden Bürgermeister von
Berlin
- (29) 文書 29 : (20. Dezember 1971) Vereinbarung zwischen dem
Senat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
tischen Republik über Erleichterungen und
Verbesserungen des Reise- und Besucherverkehrs
(mit Protokoll-vermerken und Briefwechsel zwischen
dem Staatssekretär im Ministerium für Auswärtige
Angelegenheiten der DDR, Kohrt, und dem Chef der

Senatskanzlei, Müller)

- (30) 文書 30 : (10 Mai 1972) Entschließungsantrag der Fraktionen der CDU/CSU, SPD und FDP
- (31) 文書 31 : (26 Mai 1972) Vertrag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Fragen des Verkehrs (mit Protokoll-Vermerken sowie Briefwechseln und Erklärungen der Staatssekretär Bahr und Kohl)
- (32) 文書 32 : (3 Juni 1972) Viermächte - Schlußprotokoll
- (33) 文書 33 : (16 Oktober 1972) Gesetz zur Regelungen der Staatsbürgerschaft vom 16 Oktober 1972
- (34) 文書 34 : (17 Oktober 1972) Anordnung über Regelungen im Reiseverkehr von Bürgern der DDR vom 17 Oktober 1972
- (35) 文書 35 : (17 Oktober 1972) Anordnung über Einreisen von Bürgern der BRD in die DDR vom 17 Oktober 1972 und Elfte Durchführungsbestimmung zum PaB-gesetz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17 Oktober 1972
- (36) 文書 36 : (8 November 1972) Paraphierung des Grundvertrages: Erklärungen der Staatssekretäre Kohl und Bahr

- (37) 文書37 : (8 November 1972) Briefwechsel zwischen dem Staatssekretär im Bundeskanzleram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gon Bahr, und dem Staatssekretär beim Ministerra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r. Michael Kohl, zum Post- und Fernmeldewesen
- (38) 文書38 : (8 November 1972) Briefwechsel zum Antrag auf Mitgliedschaft in den Vereinten Nationen und Erklärungen zu Protokoll zu diesem Antrag
- (39) 文書39 : (8 November 1972) Briefwechsel über Arbeitsmöglichkeiten für Journalisten, Erklärungen zu Protokoll im Zusammenhang mit diesem Briefwechsel und Erklärung beider Seiten über Ausdehnung der Vereinbarung über Arbeitsmöglichkeiten für Journalisten auf Berlin (West) bei der Paraphierung
- (40) 文書40 : (9 November 1972) Erklärung der Vier Mächte
- (41) 文書41 : (21 Dezember 1972) Vertrag über die Grundlagen der Beziehung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azu:

- * Brief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r deutschen Einheit an die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21. Dezember 1972
- * Zusatzprotokoll zum Vertrag über die Grundlagen der Beziehung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 Protokollvermerk zum Vertrag zu Vermögensfragen
- * Erklärungen zu Protokoll zu Staatsangehörigkeitsfragen
- * Briefwechsel vom 21. Dezember 1972 zur Familienzusammenführung, zu Reiseerleichterungen und Verbesserungen des nichtkommerziellen Warenverkehrs (mit Erläuterungen)
- * Briefwechsel vom 21. Dezember 1972 zur Öffnung weiterer Grenzübergangsstellen
- * Briefwechsel vom 21. Dezember 1972 mit dem Wortlaut von Not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 Artikel 9 des Vertrages

* Erklärung beider Seiten in bezug auf Berlin

(West)

* Mündliche Vereinbarung über politische Konsultationen bei Vertragsunterzeichnung

* Erklärung zu Protokoll über die Aufgaben der Grenzkommission durch die beiden Delegationsleiter

* Erklärung zu Protokoll über den Verwaltungssverkehr durch den Delegationsleiter der DDR

(42) 文書 42 : (21 Dezember 1972) Erklärungen der Verhandlungsführer bei Unterzeichnung des Grundvertrages

(43) 文書 43 : (22 Dezember 1972) Denkschrift zum Vertrag über die Grundlagen der Beziehung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44) 文書 44 : (18 Januar 1973) Regierungserklärung von Bundeskanzler Willy Brandt - Auszug -



✿✿ 參 考 事 項

(總目次：東・西独關係の 發展過程)



**** 參 考 事 項**

<<總 目 次>> 東・西獨關係의 發展過程

卷 頭 言

序 論

第 一 篇 政治的 前提條件의 設定

第二篇 現實的 關係의 發展過程

**第 1 章：交易，非交易（非商業性） 物品交流의 支払去來 및 郵便
通信交流制度**

第 1 節：內獨間 交易

第 1 項：原 則

第 2 項：方 法

第 3 項：發展過程

第 2 節：非交易物品交流

第 1 項：膳物小包의 通行問題

第 2 項：旅行往來時의 膳物取扱問題

第3項：移徙品과 相統財産問題

第3節：非交易 支払去來 및 清算去來

第1項：發展過程

第2項：現行支払方法

第3項：閉鎖計定

第4節：郵便通信交流

第1項：1945년이후의 發展過程

第2項：郵便關係交渉 前史

第3項：1970.4.29 協定

第4項：1971.9.30 議定書

第5項：基本條約상의 規則

第2章：通行制度와 旅行往來

第1節：通行制度

第1項：1945년이후의 發展過程

第2項：通行條約

第2節：旅行往來

第1項：獨逸聯邦共和國으로 부터 獨逸民主共和國으로 旅行할
경우

第2項：獨逸民主共和國으로 부터 獨逸聯邦共和國으로 旅行할
경우

第3項：「베를린」(西伯林)居住人이 獨逸民主共和國과 東「베를린」으로
旅行할 경우

第3章：「베를린」(西伯林)通行關係

第1節：4 大國協定

第2節：通行協定

第4章：法律，行政問題와 人道的，現實的 問題들

第1節：裁判所間의 法律 및 行政支援交流의 國家辯護機關間의
交流問題

第2節：國籍問題

第3節：政府接觸

第1項：行政上의 官의 支援

第2項：自治團體의 連繫關係

第3項：局地 境界問題

第4項：「베를린」의 上院과 獨逸民主共和國間의 特殊問題에 관한
規定

第4節：特殊한 경우의 支援

第5節：保健과 環境

第1項：保健制度

第2項：環境保護

第5章：文化，体育，教育 및 科学分野의 關係

第1節：文化分野의 交流關係

第2節：体育關係

第3節：芸術分野의 接觸，書籍去來關係 및 圖書館과 文書室間의 交流

第4節：教育，科学 및 技術關係

第5節：철자법改革 및 言語發達過程

第6章：新聞，映畫，「라디오」 및 「텔레비죤」

<附 錄>

* 文書目錄

* 略語表示

* 人名 및 索引